

2020년 연구보고서

UN-CTS 한국데이터 검증 연구 : SDGs 지표 중심으로

UN Surveys o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Operation System

2021. 4.



<http://kostat.go.kr/sri>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UN-CTS* 한국 데이터 검증 연구 : SDGs 지표 중심으로

(UN Surveys o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Operation System)

박영실 · 진유강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SRI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UN-CTS 체계의 이해	3
제1절 연혁	3
제2절 조사표 및 자료수집 체계	6
제3절 데이터 포털	17
제4절 국내 UN-CTS 거버넌스 체계	20
제3장 UN-CTS 내 한국 데이터 검증과 개선방안 도출	24
제1절 검증대상 지표 선정	24
제2절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 (SDGs 16.1.1 지표)	26
제3절 폭력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SDGs 16.1.3 지표)	37
제4절 범죄 두려움 느끼는 인구비율(SDGs 16.1.4 지표)	46
제5절 범죄신고율(SDGs 16.3.1 지표)	52
제6절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SDGs 16.3.2 지표)	55
제7절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SDGs 16.5.1 지표)	58
제8절 국내 및 국제기구 통계 개선방안	64
제4장 결론	68
참고문헌	70
부 록	73
Abstract	82

요 약

국제기구 통계는 글로벌 전체의 현황 점검과 국가 간 비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별 데이터에 대한 점검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통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에 제공한 국가 데이터가 정의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국제기구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흐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범죄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인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UN-CTS)에 제공 중인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를 비롯한 6개 SDGs 지표의 글로벌 정의, 주요 개념, 데이터를 살펴본 후 이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제공된 국내통계를 검토하였다. 개념 및 수치 등을 검증한 결과 두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두 데이터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모호하거나, 심지어는 국내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개념 차이가 발견된 경우는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내 관계기관에 요청할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유사통계를 제언하기도 하였다. 향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SDGs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선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범죄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기구 데이터의 검증과 그에 따른 적극적 개선 요청을 통해 국가와 국제기구 간 데이터 흐름 체계가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UN-CTS, 고의적 살인, 폭력범죄, 범죄 두려움, 범죄 신고율, 형 미선고자, 뇌물

제 1 장

서 론

UN SDGs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SDGs를 기점으로 데이터 및 통계 영역에서도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DGs 채택 이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마련되고 (IAEG-SDGs, 2019),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품질이 담보된 공식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데이터 수집 절차, 보정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SDGs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169개의 세부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행과정이 200여 개가 넘는 지표로 매년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SDGs 모니터링 과정에서 목도하고 있다.¹⁾

국가에서 제공한 국제기구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 그간 무관심했던 것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논의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감지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최근의 COVID-19, 기후위기 등은 개별 국가의 이슈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글로벌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제공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범죄분야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품질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범죄분야는 공식범죄통계가 갖고 있는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포착해내기 위한 자기보고(self-reporting) 조사의 개발 등 ‘범죄현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내고자 하는 측정 논쟁이 있는 영역이다. 국내에서도 1962년 경찰청 및

1) UN은 매년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여 글로벌 전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국가별 통계역량강화 문제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청 소관의 범죄통계가, 이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1994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자기보고식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가 개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식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09; 강지현 외, 2012). 여기에, 2019년 5월에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Center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가 대전에 개소하며 향후 한국이 아태지역 내 표준화된 범죄통계 생산 및 역량강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센터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SDGs 범죄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범죄 데이터의 중요한 출처인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를 대상으로, 여기에 제공 중인 국내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국내 범죄 데이터의 개선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 데이터 국제비교 과정에서 각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국가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통계 등이 국제비교 과정에서 사용됨으로써 종종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만들던 관행들이 투명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UN-CTS 체계의 이해

제1절 연혁

UN-CTS(이하 CTS)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범죄 발생에 관한 데이터 수집·공표·분석을 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이다. 이 조사는 다양한 형사사법 시스템 사이의 상호관계와 범죄추세를 보여주고,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²⁾

1. 주요 역사적 배경

국제적 수준에서 범죄 통계 수집에 대한 논의는 1853년 브뤼셀에서 열린 General Statistical Congress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872년 런던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of Crime에서 개념의 비교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하에서 수집되는 범죄통계 비교의 어려움이 이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1946년 이후, IPPF(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Foundation)는 범죄 관련 기능을 UN에 상당 부분 이양하였으나, 이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1937-1946년간 제한적으로나마 국가 간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1948-1951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초기에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범죄통계 수집에 관심을 갖긴 하였으나, 1970년대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CTS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77년이다.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조사표 정교화(1981년, 1983년, 1986년, 1998년) 과정을 거쳐 1999년부터 2년 주기의 정기 조사가 시작되었다. CTS가 큰 폭으로 개편된 시점은

2) UNODC 홈페이지(www.unodc.org) 참조(인출일: 2020년 6월 30일)

2006년과 2009년이다. 2006년 비엔나 전문가 그룹 미팅에서는 자료수집, 연구 및 분석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CTS 10차 설문지가 6-9차 설문지와 유사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방점은 개념의 명확화, 맥락과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2009년 11차 조사부터 CTS 조사가 매년 실시되었으며, 회원국 보고 부담 감소를 위해 조사표는 엑셀 포맷으로 변경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범죠타데이터포털에서 서비스 중이다.³⁾ 한편, 2012년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COSOC 결의안(2012/18)에 따라 각국에 책임기관(Focal Point) 지정을 요청하였다.

2. UN-CTS 내 SDGs 반영 노력

최근 CTS의 주요한 변화 노력 중 하나는 SDGs 데이터 수집을 주요 기능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TS 국가별 책임연락기관 대상으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오픈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차 미팅(2016년 5월)의 핵심 논의 사항은 SDGs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요청되는 범죄 데이터를 CTS 체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SDGs에는 폭력(violence), 인신매매와 조직범죄(illicit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정의·법 및 부패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justice, rule of law and corruption)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표 2-1> 참조).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범죄 공통 용어, 측정, 분석 및 통계적 프레임워크들의 제공 틀이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생산이 지원된다.⁴⁾ 구체적으로 CTS 내 SDGs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개별 범죄통계 항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3) 1984년 ECOSOC은 UNODC에 범죄동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조사에 기반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요청한 바이다.

4) ICCS 공표(2015년) 이후, 한국은 통계청 주도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한 한국표준범죄분류체계(KCCS) 개발을 진행 중이다.

<표 2-1> 범죄 영역과 SDGs 지표 간 연계

영역	SDGs 지표
폭력	16.1.1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16.1.3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피해 인구 비율
	16.1.4 범죄 두려움 인구 비율
	11.7.2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가혹행위
	16.2.3 18세 이전 성폭력 인구 비율
	5.2.1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
	5.2.2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 이외)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16.2.2 인신매매 피해자 수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16.4.2 불법무기흐름
정의, 법치, 부패	16.3.1 범죄 보고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5.1 뇌물(개인)
	16.5.2 뇌물(기업)

출처: Bisogno(2016)

둘째, SDGs 범죄지표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범죄피해조사의 표준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폭력 발생률(violence prevalence), 안전에 대한 인지, 폭력범죄에 대한 보고율 등의 자료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폭력범죄경험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한 부가항목의 포함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가혹행위(harrasment), 정서적 폭력과 같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조사에 기반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법론과 표준화된 조사 틀을 발전시킬 것 등이 논의되었다. 이외,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 단위에서의 CTS 책임연락기관의 역할이 데이터 품질 및 국가 참여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는 점이다. 사실 이 미팅이 CTS 국가별 책임연락기관의 첫 번째 미팅이었다(UNODC, 2016).

2차 미팅은 2018년 6월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티어3 지표군⁵⁾이었던 SDGs 범죄지표(폭력, 인신매매, 부패, 인권, 사법정의) 측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5) SDGs 지표는 데이터 가용성 및 방법론 구축 여부에 따라 세 가지 티어로 구분된다. 티어1은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티어 2는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지표, 티어3은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인 지표를 말한다.

아울러CTS 체계 수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가별 책임기관으로부터 수렴되었는데 특히, 범죄 및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데이터 수집 과정, 메타데이터 수정, 자료수집과정 개선 방안, 국가별 책임연락기관 역할 개선 등에 관한 것이 주 논의대상이었다(UNODC, 2018).

제2절 조사표 및 자료수집 체계

1. 조사표 개요

UNODC는 매년 각국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엑셀 형태의 CTS 조사표와 메타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가 누락 혹은 중복집계되지 않도록 연관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다. 조사표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①고의적 살인, ②폭력범죄, ③기타 범죄와 같은 직접적인 범죄의 발생과 관련된 항목, ④범죄와 범죄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형사사법처리 과정, ⑤교정 시설 그리고 ⑥형사사법역량과 관련된 인력 현황이다. 마지막은 각국에서 조사되는 ⑦범죄피해조사 관련 항목으로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항목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당국의 공식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범죄 발생비율과 신고율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⁶⁾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표는 2년 주기의 순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별로 매년 조사되는 항목(범죄 발생건수 등 총괄 자료)과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항목(범죄자와 피해자 및 범죄 방법 등)이 구분되어 있다. 7개의 섹션 중 형사사법 분야의 인력 및 역량과 관련된 섹션만 유일하게 2년마다 조사되며 그 외 섹션들은 모두 매년 조사되지만, 그 안의 항목들은 다시 매년 조사 항목과 순환 조사 항목(rotating items)으로 구분된다.

CTS의 조사표에는 각 섹션별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시트 외에도 개요(introduction), 안내(instructions), 정의(definitions) 등 세 가지의 안내 섹션을 별도로 제공한다(부록 1 참조). 개요 시트에는 CTS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별 책임연락관 이름과 연락처, 데이터 제출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CTS의 담당자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 시트에는 CTS 조사표를 입력하기 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주요 검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섹션별로 조사되는 항목의 리스트와 함께, 조사 항목별 응답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사연도, 입력방법 등 데이터 입력에 필

6) UN-CTS 조사 항목의 국문 번역은 통계청(2016)의 ICCS 번역본을 따랐다.

요한 주의사항이 담겨져 있다. 정의 시트에는 각 조사 항목별로 ICCS에 명시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사 항목별 입력 시 포함되는 범죄와 제외되는 범죄, 계산 방식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표 2-2> UN-CTS 조사표 구성 (2017-2018년 조사 기준)

번호	주제	기본 항목 (매년)	순환 항목(2년 주기)	
			1년차(홀수해)	2년차(짝수해)
1	고의적 살인	고의적 살인 범죄 (기수, 미수), 성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범죄자와의 관계, 범죄 상황 및 살해 방법	피해자 특성(성별, 연령별, 국적별, 지역별(3개 대도시)), 범죄자 특성(성별, 연령별, 국적별, 범죄경력별)	
2	폭력 범죄	중한 폭행, 강도, 납치, 유형별 성폭력	중한 폭행(범죄자와의 관계별, 성별), 성폭력 범죄자(범죄자와의 관계별, 성별)	성착취 피해자(성별, 연령별), 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사이버 포함), 아동 포르노(사이버 포함)
3	기타 범죄	마약범죄(유형별), 부패범죄(유형별), 불법이주, 무기 및 폭탄물 거래, 조직범죄가담, 테러리스트단체 가담, 테러리즘 재정지원	침입절도, 절도, 차량절도, 사기(사이버 포함), 자금세탁	사이버범죄(유형별), 환경범죄(유형별)
4	형사사법 처리 과정	입건자수, 기소자수, 수용자수(양형수준별, 성별), 미결수 (구금기간별)	전체 입건자수, 기소자수, 수용자수 (성별, 연령별, 국적별), 미결수(법률대리 형태별)	입건자수, 기소자수, 기결수(ICCS 대분류1)
5	교정 시설	수감자(성별, 연령별, 국적별), 수감자 (양형수준별, 성별), 미결수(구금기간별)	교정시설 내 사망률(유형별)	당해연도 수감자수(선고 상태별), 보호관찰 대상자 수(성별)
6	형사사법 인력 및 역량	-	-	경찰인력(성별, 기능별), 검찰인력(성별), 판사(성별), 교도관(성별, 기능별), 교도소/소년원 규모, 교정시설 수
7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조사 결과	-	-

각 섹션별 주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고의적 살인(Intentional Homicide)

CTS 조사표 중 가장 먼저 작성되는 부분은 ‘고의적 살인’에 관한 사항이다. 크게 5개 부문의 항목으로 나뉘지는데, ①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동, ②고의적 살인의 피해자(성별), ③고의적 살인의 가해자와의 관계(성별), ④상황별 고의적 살인의 피해자(성별), ⑤고의적 살인의 방법(성별) 등이다. 특히 CTS는 ‘피해자(victims)’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와 사건 맥락, 살해 방법 등을 조사한다. 제1섹션의 ‘고의적 살인’은 매년 조사되는 항목과 2년마다 조사하는 순환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순환항목은 보다 세분화된 피해자 정보와 가해자의 특성 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UN-CTS 조사표 중 ‘고의적 살인’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1.1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동		-	매년
1.1.1	고의적 살인 범죄(기수, 건수)	-	
1.1.2	고의적 살인 범죄(미수, 건수)	-	
1.2 고의적 살인 피해자		-	
1.2.1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성별	
1.3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		-	
1.3.1	친밀한 파트너(a) 또는 가족(b)	관계별(a, b), 성별	
1.3.2	그 외 아는 사람	성별	
1.3.3	모르는 사람	성별	
1.3.4	파악 불가	성별	
1.4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상황별)		-	
1.4.1	조직범죄 및 폭력배	성별	
1.4.2	그 외 다른 범죄행위	성별	
1.4.3	개인 간 살인	성별	
1.4.4	사회정치적 살인	성별	
1.4.5	테러 범죄	성별	
1.4.6	파악 불가	성별	
1.5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살해방법별)		-	
1.5.1	화약무기 또는 폭탄	-	
1.5.2	다른 살인 도구	-	
1.5.3	살인 도구 없음 / 다른 방법	-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1.6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격년 (홀수해)
	1.6.1~1.6.10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연령별*, 성별	
1.7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1.7.1~1.7.2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국적별(자국민, 외국인), 성별	
1.8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1.8.1~1.8.3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도시별(인구 규모별 3대 도시)	
1.9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성별, 연령별)			
	1.9.1~1.9.10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	성별, 연령별*	
1.10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국적별, 성별)			
	1.10.1~1.10.2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	국적별(자국민, 외국인), 성별	
1.11 고의적 살인 가해자 수(범죄경력별, 성별)		살인 기소 기준	
	1.11.1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가해자 수	-	
	1.11.2 과거 범죄경력이 없는 가해자 수	-	
	1.11.3 과거 범죄경력을 알 수 없는 가해자 수	-	

출처 : UN-CTS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cts-data-collection.html>

주: *: 연령 구분 : 0~9, 10~14, 15~17, 18~19, 20~24, 25~29, 30~44, 45~59, 60 이상, 미상
(이하 조사표 내 동일)

나. 폭력범죄(Violent Crimes)

CTS 조사표 섹션2는 ‘폭력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폭력범죄는 크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매년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위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야기하는 행동(중한 폭행, 납치), ②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성폭력, 성적 착취), ③재산과 관련한 폭력과 위협이 발생한 행위 등이 다. 순환 항목으로 조사되는 통계는 총 5개인데 이 중 중한 폭행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 성별)와 성폭력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 성별)는 1차 연도(홀수 해)에, 위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야기한 행동(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아동 포르노), 성적 착취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은 2차 연도(짝수 해)에 조사된다.

<표 2-4> UN-CTS 조사표 중 ‘폭력범죄’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2.1 피해를 야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매년
2.1.1	중한 폭행 범죄 수	-	
2.1.2	납치 범죄 수	-	
2.2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2.2.1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유형별)	강간, 성폭행, 기타 성폭력 행위	
2.2.2	성적 착취	-	2년 (홀수 해)
2.3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2.3.1	강도 건수	-	
2.4 중한 폭행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별, 성별)			
2.4.1	중한 폭행 피해자 수(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성별	
2.4.2	중한 폭행 피해자 수(다른 아는 사람)	성별	
2.4.3	중한 폭행 피해자 수(모르는 사람)	성별	
2.4.4	중한 폭행 피해자 수(미상)	성별	
2.5 성폭력 피해자 수(가해자와의 관계별, 성별)			2년 (짝수 해)
2.5.1	성폭력 피해자 수(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성별	
2.5.2	성폭력 피해자 수(다른 아는 사람)	성별	
2.5.3	성폭력 피해자 수(모르는 사람)	성별	
2.5.4	성폭력 피해자 수(미상)	성별	
2.6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2.6.1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사이버	
2.7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2년 (짝수 해)
2.7.1	아동 포르노	사이버	
2.8 성적 착취 피해자 수			
2.8.1~2.8.8	성적 착취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	연령, 성별	

다. 기타 범죄(Other Crimes)

CTS 조사표의 섹션3은 ‘기타 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기타 범죄에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범죄(3.1), 사기와 부패 범죄(3.2), 불법 이주(3.3),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3.4) 등이 연간 조사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순환 항목으로 조사되는 내용은 1차 연도에는 재산 침해행위(3.5), 사기 및 자금 세탁(3.6) 등과 관련된 항목이며, 2차 연도에는 공공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 중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3.7), 환경 파괴 범죄(3.8) 등이 해당된다. 데이터는 각 항목별 범죄 행위에 대한 건수를 조사한다.

<표 2-5> UN-CTS 조사표 중 '기타 범죄'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3.1 규제 행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과 관련된 행위			매년
3.1.1	규제된 약물 또는 전구물질과 관련된 불법행위		
3.2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3.2.1	부패	뇌물 수수 등	
3.3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3.3.1	이주자 밀입국		
3.4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3.4.1	무기와 폭발물의 밀매		
3.4.2	범죄단체에 가담하는 행위		
3.4.3	테러조직 가담		
3.4.4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3.5 재산 침해행위			2년 (홀수 해)
3.5.1	절도 목적의 침입		
3.5.2	절도	동력운송 수단 절도	
3.6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3.6.1	사기		2년 (짝수 해)
3.6.2	자금 세탁		
3.7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3.7.1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3.7.2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3.7.3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 차단 또는 접근		
3.8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3.8.1	환경 오염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		
3.8.2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3.8.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실물의 거래 또는 소유		
3.8.4	자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라. 형사사법 절차 과정(Criminal Justice System Process)

CTS 조사표의 섹션4에서는 각국의 범죄 사법 정의 관련 제도와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4.1의 경우, 5개 범죄(고의적 살인, 강간, 마약소지, 마약거래, 뇌물)에 대해 경찰 수준에서의 입건 수(성별)를 조사한다. 또한 기소 건수(검찰)와 선고 건수(법원), 당해 연도 수감자 수와 현재 총 수감자 수(교정시설)를 조사한다. 이 항목들은 매년 조사된다. 2년마다 조사되는 항목은 총 5개 지표로 1차 연도에는 ① 입건자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②기소자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③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대리 여부 건수, ④유죄판결 받은 자의 수(연령별, 성별, 국적별) 등을 조사하며, 2차 연도에는 ICCS 대분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총 범죄건수, 입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 해당연도 구금자 수, 총 수감자 수 등을 조사한다.

<표 2-6> UN-CTS 조사표 중 '사법처리 과정'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4.1 사법처리 과정 (국제범죄분류 중분류, 세분류)			매년
4.1.1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성별	
4.1.2 검찰에 기소된 사람의 수			
4.1.3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4.1.4 감옥에 수감되어 들어간 사람의 수			
4.1.5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4.2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2년 (홀수 해)
4.3 기소된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4.4 재판에 앞서 법률 대리를 받는 사람의 수		법률 대리 여부별, 법률 대리 시 비용 지불 여부별	
4.5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연령대(성인, 청소년)별 성별, 국적별	
4.6 국제범죄분류 대분류에 해당하는 범죄(11개) 관련 건수			
4.6.1 총 발생건수			
4.6.2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수			
4.6.3 검찰에 기소된 사람의 수			
4.6.4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4.6.5 감옥에 수감되어 들어간 사람의 수			
4.6.6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마. 교정시설(Prisons)

CTS 조사표의 다섯 번째 섹션은 ‘교정시설(Prison)’에 관한 사항이다. 매년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감자 수(성별, 연령별, 국적별), 둘째, 교정시설 수감자의 수(선고 상태(sentencing status)별, 성별), 셋째, 미결 수감자의 구금 기간(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등) 등이다. 2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순환 항목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홀수 해에는 교정시설 수감자의 사망률(사망 원인별)을 조사하며 짝수 해에는 해당 년도별 구금자 수(선고 상태별),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성별) 등이다.

<표 2-7> UN-CTS 조사표 중 ‘교정시설’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5.1 교정시설 수감자 수			매년
5.1.1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5.1.2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성인)	성별	
5.1.3	교정시설 총 수감자 수 (청소년)	성별	
5.1.4	내국인 총 수감자 수		
5.1.5	외국인 총 수감자 수		
5.2 선고 상태별 교정시설 수감자 수			
5.2.1	미선고 중인 교정시설 수감자 수	성별	
5.2.2	선고 받은 교정시설 수감자 수	최종 선고 여부	
5.3 교정시설 수용자의 구금 기간			
5.3.1	교정시설 수감자 수 (12개월 이상)		
5.3.2	교정시설 수감자 수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5.4 교정시설 내 사망률			2년 (홀수 해)
5.4.1	총 사망자 수		
5.4.2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	고의적 살인, 자살, 사고사 등	
5.4.3	자연사로 인한 사망자 수		
5.5 선고 상태별 당해 연도 수감자 수			2년 (짝수 해)
5.5.1	당해 연도 수감자 수	선고 상태별	
5.6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5.6.1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	성별	

바. 형사사법 체계 인력 및 역량(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nel and Capacity)

CTS 조사표의 다섯 번째 섹션은 각국의 사법제도 내 인력과 시설 역량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경찰 인력(성별, 역할별), ②검찰 인력(성별), ③법원 인력(성별), ④교정 인력(성별, 역할별), ⑤교정시설 수용역량(성별, 연령대별), ⑥교정시설 수 등이다.

<표 2-8> CTS 조사표 중 ‘형사사법 체계 인력 및 역량’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6.1 경찰 인력	성별, 역할별 (예방, 수사, 행정)	2년 (짝수 해)
6.2 검찰 인력	성별	
6.3 법원 인력	성별	
6.4 교정 인력	성별, 역할별 (감시, 훈련, 행정)	
6.5 교정시설 수용역량	성별, 연령대별 (성인, 청소년)	
6.6 교정시설 수	수용시설 수	

사.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

CTS 조사표의 마지막 섹션은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에 관한 것으로 각국이 조사하는 범죄피해조사의 주요한 결과를 보고하는 항목이다. 순환 항목은 별도로 없으며 매년 범죄별 발생 비율과 신고 비율을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적 범죄 두려움(혼자 동네를 걸을 때), 절도 목적의 침입, 운송수단 절도, 뇌물, 신체적 폭력, 강도, 성폭력, 성폭행, 강간, 정서적 폭력 등이 해당된다.

<표 2-9> UN-CTS 조사표 중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세부 항목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7.1 발생율		매년
7.1.1 혼자 동네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성별	
7.1.2 절도 목적의 주거 침입	-	
7.1.3 운송수단 절도	-	
7.1.4 뇌물수수	성별	
7.1.5 기업체 뇌물		
7.1.6 신체적 폭력	성별	
7.1.7 강도	성별	

조사 항목		세분화	조사 주기
7.1.8	신체적 폭행	성별	매년
7.1.9	성적 폭력	성별	
7.1.10	성폭행	성별	
7.1.11	강간	성별	
7.1.12	정서적 폭력	성별	
7.1.13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7.1.14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7.1.15	신체적 또는 성적 추행	성별	
7.2 신고율			
7.2.1	신체적 폭력	성별	
7.2.2	강도	성별	
7.2.3	신체적 폭행	성별	
7.2.4	성적 폭력	성별	
7.2.5	성폭행	성별	
7.2.6	강간	성별	
7.2.7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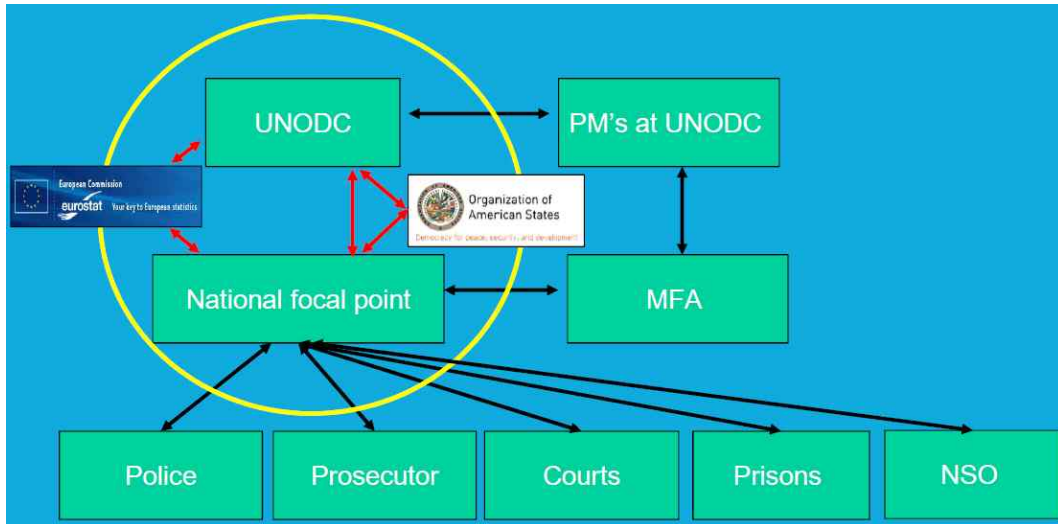
한편, UNODC는 CTS 조사표 작성 시 메타데이터 작성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부록 2). 여기에서는 각국에서 보고하는 범죄 데이터의 포괄 범위(고의적 살인 포괄 범위), 지역 데이터 포함 여부(전국 포괄 여부), 주요 용어 정의(성인 연령 등), 범죄피해조사 조사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 자료수집 체계

자료수집은 2012년 ECOSOC 결의안에 따라 지정된 국가별 책임연락관들을 통해 진행된다. 책임연락관은 경찰청, 통계청, 국가연구기관 등 범죄와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된다. 국가별 책임기관은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결성 있는 응답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으며, 필요시, UNODC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Jand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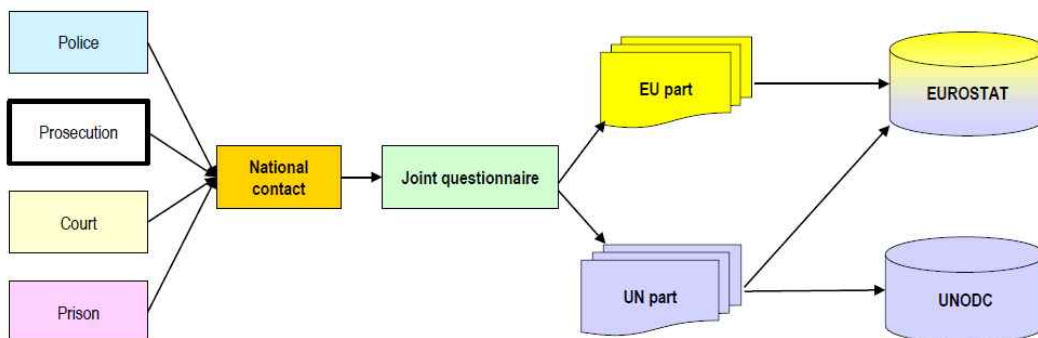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국가별 책임연락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여 UNODC에 제출한다. 한편,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국가별 책임연락관과 UNODC를 매개하는 지역기구가 있다. 유럽은 유로스탯(Eurostat), 아메리카는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⁷⁾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1> UNODC의 CTS 데이터 수집 체계(Jandl, 2016)

이처럼 지역을 매개로 하는 경우, CTS 조사 항목뿐 아니라 지역에 해당하는 별도 조사 항목을 추가로 묻는다. 유로스탯의 경우 연합 조사표(joint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EU 부분과 UN 부분을 동시에 질문하고, EU 부분은 유로스탯에, UN 부분은 유로스탯과 UNODC에 동시에 제공한다(Didier, 2016).



<그림 2-2> EUROSTAT의 CTS 데이터 수집 체계(Didi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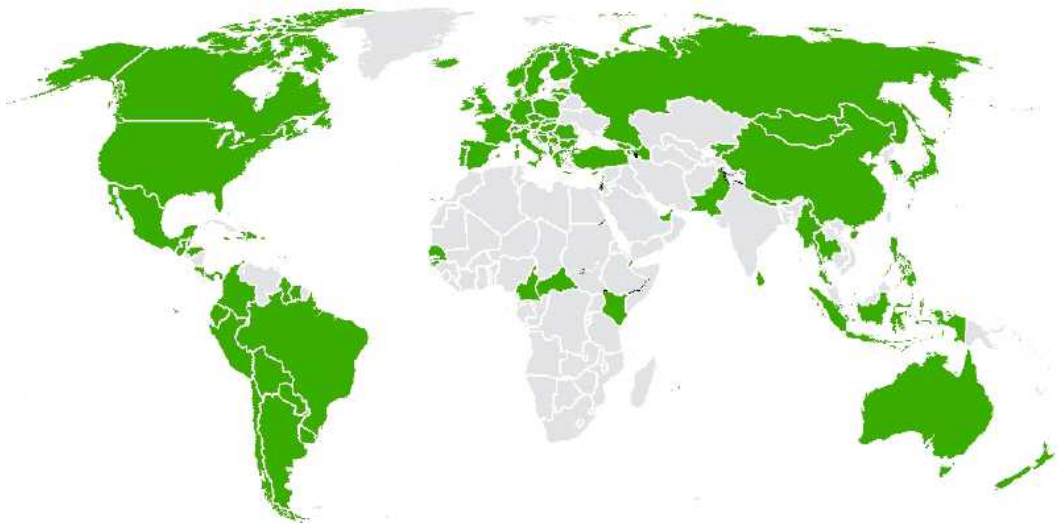
2017-2018 CTS 조사표의 경우 93개 국가와 테리토리에서, 메타데이터의 경우 71 곳에서 응답을 하였다(<표 2-10>). 응답은 모두 CTS 책임연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응답국가 분포를 보면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26개국, 아시아 23개국이며, 해당 지역

7) 지구 서반구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대륙 간 기구로 현재 35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며 그 본부는 워싱턴에 소재한다.

내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유럽은 75%인 반면에 아프리카는 11%로 그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Jandl, 2018).

<표 2-10> UN-CTS 응답 국가의 지역별 응답분포(Jandl, 2018)

데이터			메타데이터		
지역	응답	지역 커버리지	지역	응답	지역 커버리지
아프리카	6	11%	아프리카	2	4%
아메리카	26	68%	아메리카	21	55%
아시아	23	45%	아시아	16	31%
유럽	36	75%	유럽	32	67%
오세아니아	2	13%	오세아니아	0	0%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is map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그림 2-3> CTS 응답국가의 지역별 분포(Jandl, 2018)

제3절 데이터포털

UNODC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제적 수준에서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공식통계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 배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글로벌 통계 시리즈를 UNODC 데이터포털(Data Portal)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DATAUNODC

Home | SDGs | Questionnaires | Microdata | In evidence



dataUNODC

UNODC Research


Wildlife Crime

- Wildlife seizures trends and origins/destinations of seized products


Homicide

- Homicide rates (Option with map)
- Homicide rates by sex
- Homicide rates by sex and age group
- Homicide rates by mechanisms
- Homicide, regional estimates
- Homicide by Intimate Partner/Family Member
- Homicide by situational context
- Homicide by sex and citizenship


Prison

- Persons held - totals
- Persons held - by sex, by age group
- Persons held - by citizenship
- Persons held - by status (sentenced/unsentenced)
- Persons held - by status and sex
- Persons held unsentenced by length of detention
- Mortality in p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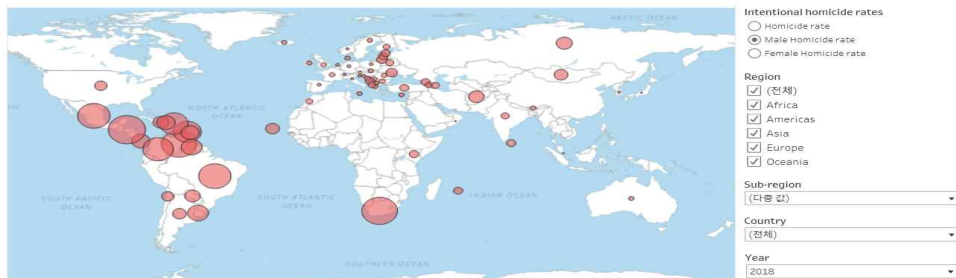

Drug Demand

- Prevalence of drug use - general population
- Prevalence of drug use - youth

<그림 2-4> UNODC 데이터포털 첫 화면 구성

Homicide rate by sex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rate : 2018
 Map on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by sex, rates, and country



* **Source:** Data are collected from national authorities through the annual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UN-CTS)**. Additional data are sourced from the most reliable sources available. Sources are shown when hovering with the cursor over the data point and can be retrieved under **"Bulk data download"** on this page. All data are sent to UN Member States for review and validation. Estimate based on UNODC homicide statistics.

==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is map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rate by sex, counts and rates per 100,000 population.

Region	Subregion	Country	Indicator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Africa	Eastern Africa	Burundi	Homicide rate										
			Male homicide rate										
			Female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Ethiopia	Male homicide count										
			Female homicide count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Kenya	Male homicide rate										
			Female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Male homicide count										
		Malawi	Female homicide count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Mauritius	Male homicide rate	1.9	2.7	2.9	1.9	2.4	2.2	3	2.1	2.7	2
			Female homicide rate	0.8	0.8	1.6	1.1	2.1	0.9	1.4	0.8	1.1	1.6
			Homicide count	20	29	31	21	27	25	34	24	31	23
			Male homicide count	16	25	22	15	15	20	26	19	24	13
		Mayotte	Female homicide count	4	4	9	6	12	5	8	5	7	10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Mozambique	Male homicide rate										
			Female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Male homicide count										
		Réunion	Homicide rate										
			Homicide count										

<그림 2-5> UNODC 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표출 방법: 지도 및 테이블

데이터 포털은(<https://dataunodc.un.org>)은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뿐 아니라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5>에서 보듯 살인범죄의 경우,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의 전 세계적인 규모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 및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한해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가구, 사업체의 익명성(anonymity)과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처리 후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지역 단위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에도 위치 정보에 익명성 처리를 한 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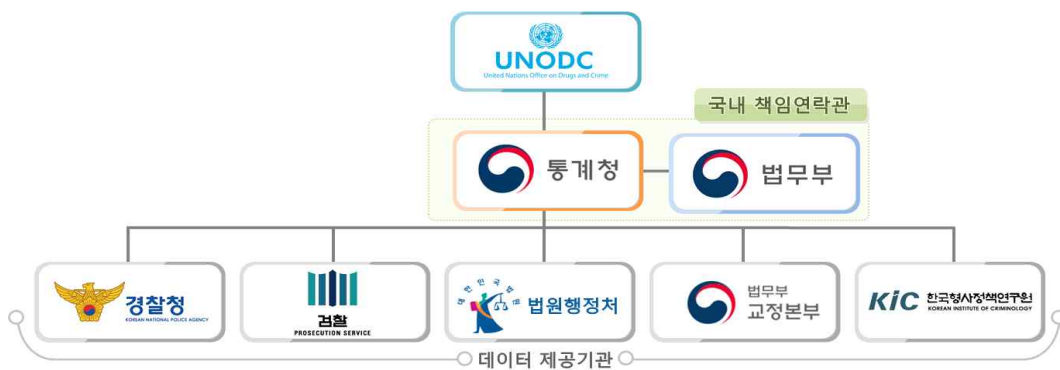
범죄데이터와 함께, SDGs 지표별 정보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UNODC가 지표 소관기구로 포함되어 있는 SDGs는 목표3과 목표16이다. 아래 <그림 2-6>은 목표 16.3.2 지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왼쪽 하단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 내 일부 국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당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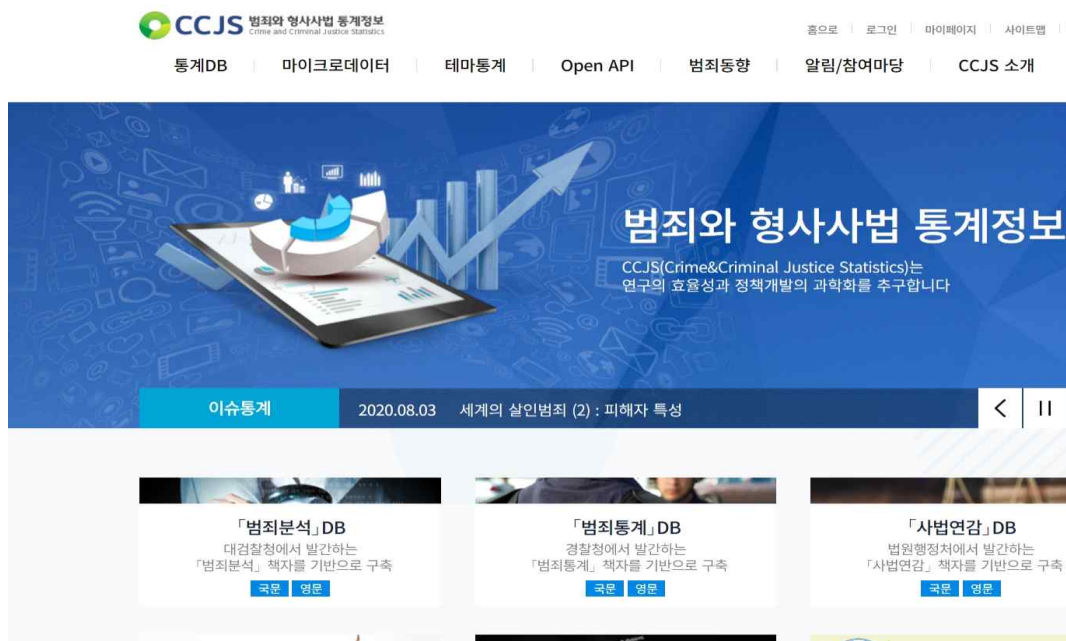
<그림 2-6> UNODC 데이터포털 내 SDGs 지표 제시 방법

제4절 국내 UN-CTS 거버넌스 체계

한국에서 CTS 책임연락관으로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다(2017년). 그러나 국내 관계부처로부터의 데이터 취합과 UNODC로의 데이터 제출은 통계청 통계기준과가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은 각 기관에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범죄사건 통계, 검찰청은 기소자 정보 등,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인력 등,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소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CTS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저자 작성)



<그림 2-8>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첫 화면 구성

국내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은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사이트(www.crimestats.or.kr)이다(<그림 2-8> 참조). CCJS는 신뢰성 있는 범죄통계의 제공, 이용자 중심의 범죄통계 서비스라는 목표 아래 구축되었다. 이 사이트는 통계DB, 범죄동향, 테마통계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및 시각화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구체적으로, 각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 2-9>는 통계DB를 보여주는데, 다양한 통계표와 통계항목을 교차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국내 범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집계된 데이터뿐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조사표와 코드북 함께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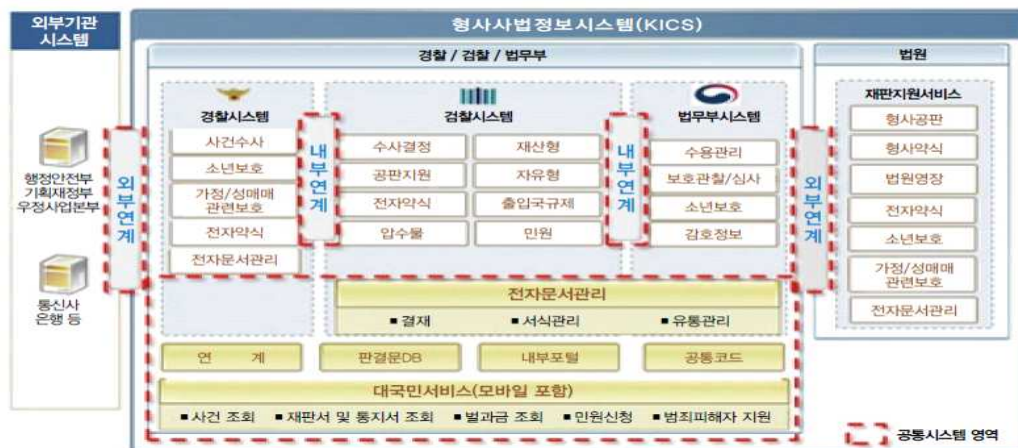
<그림 2-9>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내 통계DB 및 인포그래픽스 화면 구성

법무부는 2010년 7월 형사사법포털(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을 개설하였다(www.kics.go.kr). 형사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와 안내, 벌과금 납부조치 등 형사사법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이는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피드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그림 2-10> 참조).



<그림 2-10> 형사사법포털 첫 화면 구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그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간 각자 운영하던 시스템을 아래 <그림 2-11>과 같이 내부연계를 통해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용되는 형사사법 정보는 현재 총 380종이고, 형사사법 기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24종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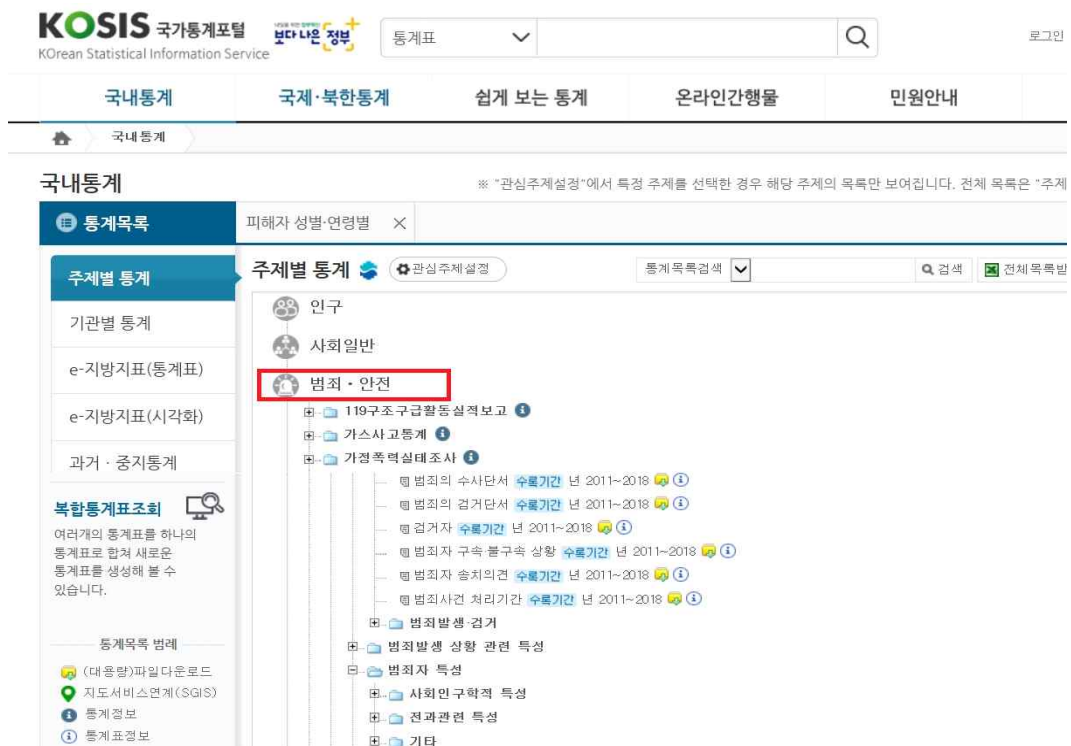


<그림 2-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성도

8) 형사사법포털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개 책자 기준. 소개 책자의 작성연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기준일을 제시할 수 없음. 작성연도에 따라서 공유되는 정보 수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관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해 표준화된 통계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경찰과 검찰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공유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관마다 상이한 통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통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 산출과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다만, 현재 형사사법통계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내부인에 한정되며 이는 통계자료 집계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내 승인통계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도 범죄 분야에 관한 데이터 서비스를 아래 <그림 2-12>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범죄 및 안전 영역에서 범죄 관련 국내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다.



<그림 2-12> 국가통계포털 범죄 데이터 서비스 화면

제 3 장

UN-CTS 내 한국 데이터 검증과 개선방안 도출

제1절 검증대상 지표 선정

<표 3-1>은 UN SDGs 데이터베이스⁹⁾에서 CTS가 데이터 출처이거나 데이터 출처로 예상되는 6개 SDGs 지표 리스트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월 UNODC는 2018년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에 앞서 각 국가에 최종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아래 6개 지표가 CTS 설문 내용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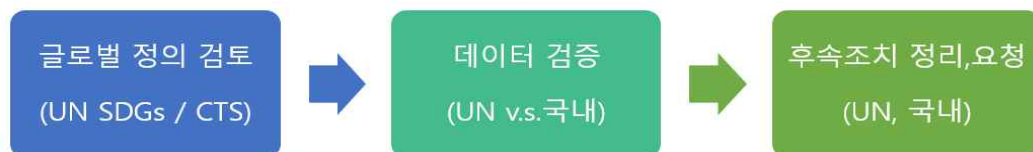
<표 3-1> SDGs 범죄지표 현황과 UN-CTS 조사표 연계

SDGs			UN-CTS
지표번호	지표명	표시된 출처	항목 번호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CTS	1.2.1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범위에 노출된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subjected to (a) physical violence, (b) psychological violence and (c) sexual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UNODC	7.1.6(신체적) 7.1.12(정서적) 7.1.9(성적)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feels safe walking alone around the area they live)	UNODC	7.1.1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victims of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who reported their victimiza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or other officially recognize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UNODC	7.2.1(신체적) 7.2.4(성적)

9)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는 각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보정한 이후 UN 데이터베이스(<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에 제공한다.

SDGs			UN-CTS
지표번호	지표명	표시된 출처	항목 번호
16.3.2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수용자 비율(Unsentenced detainees as a proportion of overall prison population)	CTS	5.2.1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 한 번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Proportion of persons who had at least one contact with a public official and who paid a bribe to a public official, or were asked for a bribe by those public officials,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CTS	7.1.4

CTS를 통해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고 있는 한국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먼저, SDGs 지표에 대한 글로벌 정의를 검토하였다. 위 6개 SDGs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인 CTS를 주관하는 UNODC이다. SDGs 지표 소관기구는 각 지표의 표준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방법론을 구축하는 역할과 함께 국가로부터의 자료수집 역할을 맡고 있다(UNSC, 2017). 따라서, SDGs 지표와 CTS 양쪽에서 동일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전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 지표 메타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주로 검토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CTS 설문지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보충하였다.¹⁰⁾ 개념을 검토한 이후에는 SDGs 데이터베이스와 CTS 데이터 포털 등 UN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 데이터가 과연 글로벌 개념 정의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통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개념 정의와 수집된 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비교 분석한 후 국내 통계개선이 필요한지, 국제기구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지 등 후속조치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그림 3-1> UN에서 활용 중인 국내 데이터 검증 절차

먼저,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데이터 검증에 해당하는 절은 제2절부터 7절까지인데 각 절 제목은 SDGs 지표명을 축약하였다.

10)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고문헌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UN SDGs 메타데이터 정보를 참조하였음을 뜻한다. 구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UN SDGs와 CTS를 표시하였다.

제2절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율(SDGs 16.1.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지표는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후 10만 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의적 살인범죄란, 사망이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unlawful death inflicted upon a person with the intent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를 일컫는다. 통계적 목적의 국제범죄분류(Inten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에 의하면 고의적 살인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그 요건이라 함은 첫째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죽음(객관적 요소), 둘째 피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심각하게 상해를 일으킬 가해자의 의도(주관적 요소), 셋째 불법적 살해, 불법적 죽음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이 있다는 법적인 고려(법적 요소)이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포함되는 범죄 유형으로는, 모살(murder), 명예살인(honor killing), 중한 폭행으로 인해 초래된 사망(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테러 행위로 인한 사망, 지참금 관련 살해(dowry-related killings), 여성혐오살해(femicide), 영아살해(infanticide), 고의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사법과잉살해(extrajudicial killings), 법집행인 또는 국가공무원의 과도한 위력행사로 인한 살해(killings caused by excessiv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이다. 고의적 살인범죄에 관한 SDGs 정의는 CTS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표 3-2>는 UN SDGs 데이터 베이스 내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데이터 현황이다. 2011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피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 피해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UN SDGs 16.1.1 지표 내 한국 데이터 :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구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전체	-	-	-	-	-	-	-	-
	여	217	219	182	193	198	196	153.51	154
	남	188	216	170	184	177	165	147.49	152
인구 10만 명당	전체	-							
	여	0.87	0.88	0.72	0.76	0.78	0.77	0.60	0.60
	남	0.75	0.86	0.67	0.73	0.70	0.65	0.58	0.59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8.25. 추출)

주 : 데이터 출처는 2017년부터 CTS이며, 그 이전까지는 Global Study on Homicide 2019-revision이다.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지표 16.1.1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내 데이터는 경찰청의 범죄통계(Korean Police Crime Statistics) 중 살인기수 건에 대한 피해자 규모 및 성별 분포이다. 범죄통계는 국내의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국가승인 통계로(승인번호 13204),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고소 및 고발,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산 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에 근거하여 작성 및 승인한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다(경찰청, 2019a). 탐장 또는 범죄통계 담당자가 검토 및 승인 후에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범죄통계원표의 입력을 완료하며,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계원표의 오류 자료를 3회 정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경찰청은 UNODC가 제시한 고의적 살인(Intentional 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살인범죄에 한해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국내 형법 범죄 분류체계에 따른 것이다.¹¹⁾

살인	살인(기수)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제2항 존속살해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 제2항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보복)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마수, 예비, 음모, 방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피 해 자

V-1

최종		성별·연령	계	남									자		
				소계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계 (%)		1,580,751 (100.0)	721,320 (45.6)	2,308 (0.1)	5,356 (0.3)	7,646 (0.5)	41,366 (2.6)	129,964 (8.2)	137,409 (8.7)	149,239 (9.4)	145,599 (9.2)	100,082 (6.3)			
강 령 범죄	소 계	26,787	3,160	38	149	104	352	690	440	467	544	369			
	살 인 기 수	309	152	10	—	—	2	12	21	34	42	31			
	살 인 미 수 등	488	302	5	2	—	7	32	47	62	83	64			
	강 간	821	417	—	2	7	50	88	67	62	74	67			
	강 간	5,293	39	—	2	5	9	9	4	5	3	2			
	유 사 강 간	776	93	1	16	7	19	35	4	6	3	2			
	강 제 추 행	17,053	1,406	22	120	83	250	459	188	130	127	26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56	16	—	7	—	5	1	1	—	2	—			
	방 화	1,691	735	—	—	2	10	54	108	168	210	177			

<그림 3-2> 살인에 관한 형법 분류체계와 살인기수와 미수 분리공표 현황(경찰청, 2019b)

11) 이는 기수와 미수 사이에 죄질 심각성 차이가 존재하며, UNODC가 제시한 고의적 살인범죄(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경찰청, 2019a:11-12).

검증 결과, 2011년-2016년까지는 UN SDGs와 CTS 내 한국의 범죄피해자 수와 국내 통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UNODC에서 값을 보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데이터에서 살인피해자 수 전체는 국내 수치와 동일하였다. 다만, 2017년의 경우에는 성별 불상에 해당하는 1명이 보정되어 계산된 수치가 제공되었다. 2018년 자료에서는 아래 <표 3-3>처럼 국내에서 제공한 살인기수에 해당하는 성별 피해자 수와 동일한 수치가 CTS, UN SDGs에서 서비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단, CTS와 UN SDGs는 UN 인구처에서 생산한 추계인구를 분모인구로 하여 발생률(10만 명당 명)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피해 발생률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¹²⁾ 한편, 여성과 남성 정보 외에 CTS에서는 성별 불상자 수가, UN SDGs에서는 성별 불상자 수와 전체 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의 경우 피해자 정보 중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3건이 있는데, UN에서 이 정보의 누락은 의도치 않게 전체 피해자수를 줄이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합을 전체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보정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로 제공된 국내 통계와 CTS, SDGs 수치 비교

2018년 기준		경찰청	CTS	UN SDGs
명	여	154	154	154
	남	152	152	152
	불상	3	-	-
	전체	309	309	-
인구 10만 명당 명	여	-	0.60	0.60
	남	-	0.59	0.59
	전체	-	0.60	-

그러나, 현재 제공된 경찰청 통계는 글로벌 정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현재 국내의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 발생건수 기준 대표 피해자 1명의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건수가 동일하며 이는 피해자 수의 과소추정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12) 범죄발생률은 계산하여 제공 중인데, 분모인구를 주민등록인구로 사용하고 있다.

범죄 발생시간

Ⅲ-1-1

시간		계	00:00~		03:00~		06:00~		09:00~		12:00~		피 해 자					
죄종																		
강력범죄	계 (%)	1,580,751 (100.0)	Ⅴ-1															
	소 계	26,787	죄종		상범·연령		계		남		자							
	살인	309	계	(%)	1,580,751 (100.0)	소계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살인미수	488	소 계	26,787	(45.6)	3,160	38	149	104	352	690	440	467	544				
	강도	821	살인	309	152	10	-	-	2	12	21	34	42					
	강간	5,293	살인미수	488	302	5	2	-	7	32	47	62	83					
	유사강간	776	강도	821	417	-	2	7	50	88	67	62	74					
	강제추행	17,053	강간	5,293	39	-	2	5	9	4	5	3						
	기타강간·강제추행등	356	유사강간	776	93	1	16	7	19	35	4	6	3					
	방화	1,691	강제추행	17,053	1,406	22	120	83	250	459	188	130	127					
			기타강간·강제추행등	356	16	-	7	-	5	1	1	-	2					
			방화	1,691	735	-	-	2	10	54	108	168	210					

주 : 범죄발생시간 표에 있는 수치는 범죄건수를, 피해자 표에 있는 수치는 인원수를 의미함

<그림 3-3> 2018년 기준 범죄건수와 피해자 수 비교 (경찰청, 2019b)

둘째, 의도를 갖고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살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행위가 현재는 살인기수 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국내의 형법 체계상 강도 및 강간 살인이 각각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의 분류체계에 흡수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강지현 외, 2012).

<표 3-4> 고의적 살인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강력범죄 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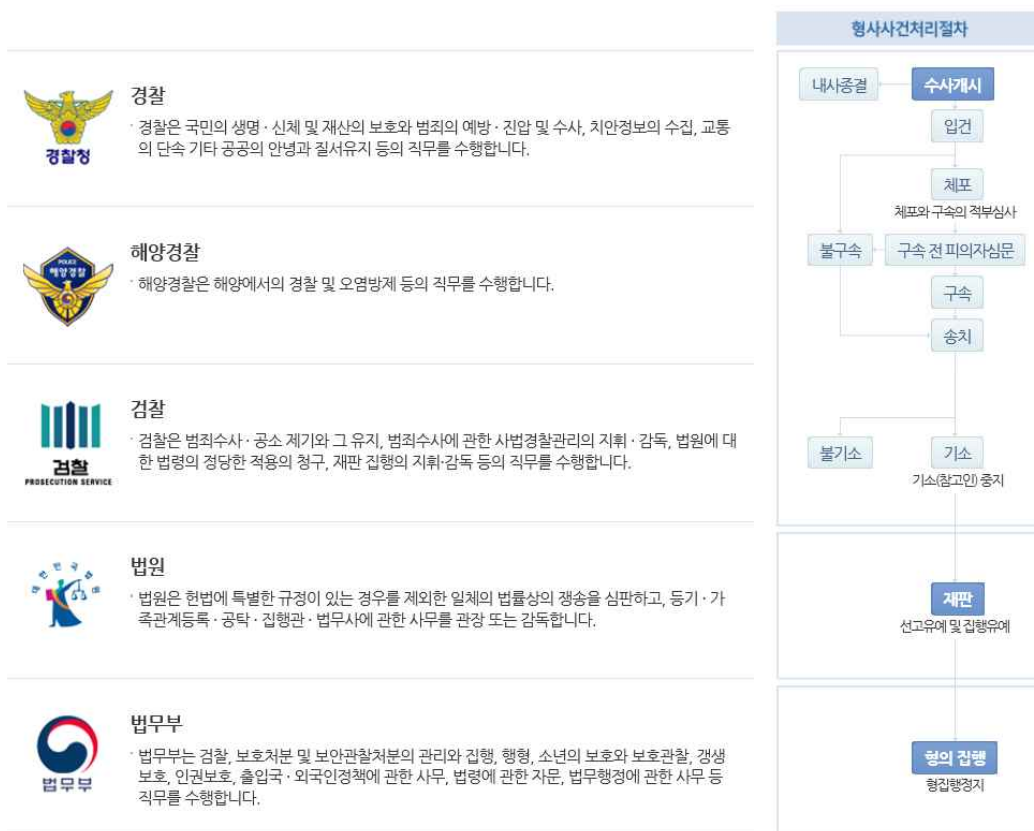
형법분류	죄명
강도살인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 형법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제340조 각 죄명) 미수
강간등살인	- 형법 제301조의 2(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각 죄명) 강간등(살인)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 형법 제305조의 2(형법 제305조 각 죄명) 상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강간등(살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형법 제301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상습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등(살인)

셋째, 준거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찰청 범죄통계는 한 해 동안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원표를 승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범죄발생 시점과 차이

가 있다. 2017년에 발생한 범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원표가 승인되었으면 해당 범죄 피해자수는 2018년으로 계산된다.

넷째, 모집단 범위와 관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는 기소 및 불기소 의견송치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므로 최종 형사처분과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 처리된 사건은 제외되어서 고의적 살인범죄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사법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인기수로 처분된 건수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이후의 단계에서 생산되는 범죄통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3-4>는 국내의 형사사건처리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경찰 (해양경찰 포함) 단계에서 접수된 사건 대상으로 수사를 한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재판으로 넘겨지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한다. 선고 이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림 3-4> 형사사건처리과정 과정(www.kics.go.kr)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사통계로는 형사사법 단계에서 산출하는 공식통계보고서이다. 이와 함께 UN에서는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사인분류 중 ‘death by assault(가해)’)를 주요 출처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당국에서 생산하는 통계와 함께 사망원인통계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형사사법 단계에서 산출되는 통계: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

경찰청 이후 검찰청, 법원, 법무부에서도 각각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라는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범죄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두 통계는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공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많이 인용되고 있는 통계집이다. 3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를 검토해 본 결과,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검찰청 통계의 경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등이 포함되어 경찰청 통계에 비해 포괄범위는 넓으나, 피해자 현황 정보에서 살인기수와 미수가 구별되지 않은 살인 전체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살인’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실제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살인 미수, 살인 음모/예비 죄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고려하여 살인기수와 미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대검찰청은 범죄발생건수에서는 살인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나 범죄피해자 특성 통계에서는 살인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에서는 피해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통계집은 법원 및 사법행정제도와 운영 관련 현황 자료가 주이며, 통계는 범죄사건의 재판 상황 중심이다. 반면, 법무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에는 범죄자 및 피해자 통계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들 통계는 대검찰청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한 것인데, 피해자 통계의 경우 범죄 분류체계를 형법범죄 전체, 강력범죄, 폭력범죄로만 구분¹³⁾하고 있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기수를 추출해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형사사법 기관의 통계 이외에 고의에 의한 살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사망원인통계는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입수

13) 검찰청에서는 형법 및 특별법에 대해 죄명별로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열거하여 공표할 수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죄명분류를 설계하여 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찰청, 2019, 통계이용정보보고서).

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작성된다. 사망신고는 기준연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 중 기준연도 사망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사망신고의 누락이 많은 영아사망과 무연고 사망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화장장 신고자료, 사망원인보완조사, 무연고 신고자료 등을 추가로 입수하여 보완하고 있다. 특히,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인을 보완하고 있다(통계청, 2019)

접수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검토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에 따라 분류한다.¹⁴⁾ 사망원인은 원사인 기준인데, 원사인이란 ①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②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KCD 코드 중 X85-Y09(가해) 코드에 살해 또는 상해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인이 가한 손상(Injuries inflicted by another person with intent to injure or kill, by any other means)이 포함되며, 이 코드 사망자수가 고의적 살인 범죄피해자와 매칭될 수 있다.¹⁵⁾ 한편, 의도 미확인 사건은 별도의 코드(Y10-Y34)로 분류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정보가 의료 또는 사법당국이 사고, 자해 및 가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고의적 타살로 분류된 피해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추이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2016년을 제외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피해자 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그 성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피해자 수가 더 높게 나온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¹⁶⁾

14) KCD는 4단위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전염성 질환, 체질적 또는 정신적 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 질환, 발육 질환, 손상, 사고의 종류 등에 따라 가장 간략하게 22개의 장으로 분류한다. 22개의 장은 다시 동일한 성질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267개 항목군으로 분류한다. 항목군 내에서 질병의 빈도, 공통된 특성 등으로 다시 2,087개의 3단위 부호로 분류한다. 단일 질환이나 상이한 해부학적 부위 또는 다양한 요인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개별 질환을 나타내는 12,493개 4단위 분류를 사용한다.

15) KCD의 번역례에 따르면 Intentional Homicide는 의도적/고의적 타살로 번역된다.

16) 경찰청 범죄통계의 피해자 정보가 대표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표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력자의 선택적 바이어스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전체 피해자 수를 대상으로 한 사망원인통계의 비표본오차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망원인통계의 성별 분포의 타당성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사망원인통계에 의한 고의적 타살자 수 추이

단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	전체	552	542	564	511	519	436	415	397
	여	242	245	264	250	252	222	199	181
	남	310	297	300	261	267	214	216	216
인구 10만 명당	전체	1.1	1.1	1.1	1.0	1.0	0.9	0.8	0.8
	여	1.0	1.0	1.0	1.0	1.0	0.9	0.8	0.7
	남	1.2	1.2	1.2	1.0	1.0	0.8	0.8	0.8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년 7월 24일 추출)

다. 경찰청 범죄통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차이 분석

<표 3-6>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세 가지 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그리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작성목적, 작성방법, 작성대상 등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과 검찰청 통계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반면, 사망원인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구조 파악을 통해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주기 및 작성대상 기간은 동일하나 경찰청과 검찰청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원표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망원인통계와 차이가 크다. 모집단의 경우에도 한국인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원인통계와 달리, 경찰청과 검찰청 통계는 각 형사사법 단계의 기능에 따라서 모집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피해자 정보를 범죄 발생 건당 대표피해자 1명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원인통계와 비교할 때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정보를 획득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3-6>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살인범죄 관련 통계 메타 정보 비교

구분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목적	치안정책 수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와 예산, 인력, 장비배치 등 경찰의 효율적 경력 운용 및 과학적인 치안활동 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	각종 범죄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발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예방적 기능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구분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공표)	1년(익년 7~8월)	1년(익년 12월)	1년(익년 9월)
작성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 (원표승인기준)	1월 1일~12월 31일 (원표승인기준)	1월 1일~12월 31일 (사망기준)
작성체계	전국 각급 경찰관서 (해경 포함)에서 입력한 범죄통계원표에 근거하여 통계 작성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입력한 범죄통계원표 정보를 집계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통계작성
모집단	전국 각급 경찰관서 (해경 포함)에서 고소·고발, 인지 등을 통한 범죄사건 및 범죄자	형사입건된 개인 및 범인사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읍면동 및 시구 (재외국민은 재외공간)에 접수된 한국인의 사망신고
작성제외	군사법원 관할, 각하의견 송치, 소년부송치, 즉심(검찰송치) 제외	군사법원 관할 범죄 제외	
분류체계	2011년 범죄통계부터 범죄분류를 기존 형법, 특별법 분류체계에서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별로 재분류	자체적으로 죄명분류를 설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중 가해 (X85-Y09)
피해자 현황	발생건수 기준 대표피해자 정보	범죄건수 기준 대표피해자 정보	- 가해에 의한 사망자 전체 - 가해자와의 관계 등 추가 정보 파악 한계

주: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는 수치상으로도 잘 드러난다. 최근 통계청은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라서 한국표준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 개발을 진행하면서 ICCS 대분류 범죄유형과 한국형법조문에 따라 범죄 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ICCS 대분류 1번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살인범죄 피해자수는 433건이다(강소영 외, 2018). 이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도출된 고의적 타살 피해자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¹⁷⁾

17) 작성대상 기준이 원표승인시점이라는 한계점은 있으나, 이것이 어느 특정 한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통계 작성 이후의 체계적인 특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원표승인시점과 사망시점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상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살인범죄 피해자수 통계 비교

2016년 기준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강소영 외(2018)
여	193	188	222	-
남	162	165	214	-
불상	1		-	-
전체	356	353	436	433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지금까지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지표 16.1.1)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 중 살인기수 건수 통계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된 값 그대로 CTS와 SDGs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UN의 피해 발생률 계산 과정에서 국내의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UN 인구처 추계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성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고의적 살인피해 건 정보가 UN CTS와 SDGs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자칫 남성과 여성의 합산이 전체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수용할 만하나 두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UN 측에 요청하여 성별 불상 정보를 각주로 게재하거나 남성과 여성과 함께 총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여러 통계 중 현재까지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지만 하나 범죄통계 또한 개념 및 포괄범위 등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통계원표의 개선 및 자료수집 과정의 변경 없이 현재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글로벌 지표 정의에 좀 더 부합하는 통계로 변경할 수 있는 조치는 살인기수에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을 추가하여 제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고의적 살인의 세 가지 구성요건에 강도살인과 강간살인 등이 적합한지를 CTS 거버넌스 주체 간에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살인기수에 강도살인과 강간살인을 추가하여 제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활용하는 것 또한 지표 정의에 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피해자 통계 정보를 살인기수와 미수로 분리하여 제표하는 포맷이 검찰청 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및 검찰청 내 공유시스템인 형사사법통계포털은 이러한 제표 작업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은 표준분류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다. 모든 기관이 모든 범죄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하므로 국내 통계 간 연계분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국제비교 가능성도 제고된다.

형사사법통계 전체에 일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대표 피해자 이외 전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로 구성되는데, 이는 그간 범죄통계의 초점이 범죄와 범죄자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 정보는 발생통계원표에서 부차적으로 수집된 정보였으며, 업무의 부담으로 대표 피해자 중심으로만 정보가 입력되었던 경향이 있다.¹⁸⁾ 사실, 검찰청(2019a: 15)은 발생통계 및 검거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건’ 단위로, 피의자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인원’(명)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건 단위 작성, 피의자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인원(명)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해석에 유의(발간물에 통계표별 범죄통계원표명과 단위 기재)

* 사례 : 피해자 관련 통계는 발생통계원표 항목이므로 건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예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수치는 해당 피해자가 발생된 인원이 아닌 사건 수임

<그림 3-3> 검찰청 피해자 통계 활용 시 주의 사항(검찰청, 2019a)

이는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범죄통계에 서는 피해자 통계의 단위를 인원 수로 기재하고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 간 통일된 포맷이 마련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된 피해자 정보 부족 상황”으로 범죄통계원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전문가들 또한 현재의 원표 체계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이나 최신 범죄에 대한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경찰청, 2019a) 향후 관계기관의 통계개선을 기대해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통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규모 및 분포에 대한 정보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정보에는 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도구 등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전체 피해자 수뿐 아니라 성 및 연령, 지역별 분포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정책 수립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하겠다.

18)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통계만 입력된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에 집계된 피해자의 수와 특성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며, 추이를 파악하는 목적에 활용 가치가 있다(박준휘 외, 2018). 그러나, 대표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력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성 및 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제3절 폭력 범죄에 노출된 인구 비율(SDGs 16.1.3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개념, 데이터

지표 16.1.3은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다. 이 지표는 전체 인구 대비 지난 1년 동안 세 가지 부문의 폭력, 즉 ①신체적, ②정서적, ③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폭력의 여러 형태를 나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지표 세분화는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교육 수준별, 국적별, 인종별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 지표는 각국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모니터링된다. 다수 국가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게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UN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범죄피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CTS 7번 섹션(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되어 SDGs의 16.1.3 지표에 제공되며, 지표 데이터의 서비스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각국의 검토를 거친다.

<표 3-8> UN SDG 16.1.3 지표에 해당하는 ‘폭력’ 개념

구분	세부 내용
신체적 폭력	국제범죄분류(ICCS)에 명시된 신체적 폭행과 동일한 개념 으로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로 다음을 포함 · 중대한 신체 상해 : 총상, 탄환에 의한 부상, 칼에 의한 부상 또는 자상, 신체 절단, 골절, 치아 탈락, 장기 손상, 의식 상실, 기타 심하거나 심각한 상해 · 중대한 물리적 위력 : 총기 공격, 찌르는 행위, 물건을 사용한 공격, 약물, 기타 심각한 신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위력의 사용 · 경미한 상해 : 타박상, 베인 상처, 찰과상, 치아 파손, 부종, 눈 부위 멍, 기타 경미한 상해 · 경미한 물리적 위력 : 때리기, 밀치기, 밀기, 발 걸기, 넘어뜨리기, 및 기타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위력의 사용
성폭력	위협, 강압, 사기, 강제, 기만, 약물이나 알코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력의 남용 등으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표 3-8>은 SDGs 16.1.3의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이 지표의 대상인 폭력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상해 및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중대한 상해부터 경미한 상해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

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강간, 성추행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UN은 SDGs 지표 16.1.3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과 성폭력은 ICCS의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성폭력(sexual violence)’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SDGs 16.1.3이 포괄하는 ‘신체적 폭력’ 개념의 범위와 CTS 조사표에서 수집하는 ‘신체적 폭력’의 포괄 범위는 일부 차이가 있다. UN SDGs의 ‘신체적 폭력’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상의 ‘신체적 폭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중한 폭행’과 ‘경미한 폭행’ 등을 포괄하는 반면, CTS의 조사표에서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더불어 ‘강도(robbery)’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CTS 조사표에는 신체적 폭행, 강도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수치 모두가 보고된다. 따라서, 16.1.3의 자료 제공 시 각각의 항목이 포괄하는 데이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UN 메타데이터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개념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제적 수준에서 정서적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측정할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조사 항목 중 하나인 ‘위협적 행위(threatening behaviour)’를 정서적 폭력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¹⁹⁾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고, 위협을 폭행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UNODC, 2018)도 있어, 정서적 폭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개념과 측정 방식이 명확해질 때까지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9> UN SDG 16.1.3 지표 내 한국 데이터 : 범죄피해율

구분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체적 폭력*	전체	-	-	-	-	0.1	-	0.2	-	0.2
	남성	-	-	-	-	-	-	0.2	-	0.2
	여성	-	-	-	-	-	-	0.1	-	0.1
강도	전체	0.1	0.2	0.2	0.2	0.4	0.1	0.6	-	0.1
	남성	-	-	-	-	-	-	0.1	-	0.1
	여성	-	-	-	-	-	-	-	-	0.1
성폭력**	전체	0.62	0.65	0.88	0.97	1.5	1.15	1.1	-	0.1
	남성	0.04	0.04	0.05	0.06	0.01	0.08	0.01	-	0
	여성	0.74	0.78	1.06	1.19	0.28	1.44	0.23	-	0.1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7월 31일 추출)

주: *: 중한 폭행과 경미한 폭행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폭행시도(attempt)도 포함됨.

**: 성폭력에는 신체적 성폭행(Physical sexual assault)만 포함되고, 비신체적 성폭행(non-physical sexual assault), 강간(rape)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음

19) 여기서 위협적 행위는 최소한 상해나 위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로 정의된다. 2018년 제2차 CTS 책임연락기관 및 ICCS 기술자문회의에서도 신체적 폭행 및 강도의 위협과 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UNODC, 2018).

<표 3-9>는 SDGs 16.1.3의 지표에 대해 현재 UN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국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데이터는 2014년까지 매년 제공되고 그 이후는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다. 두 데이터 모두 현재 자료원은 UNODC로 되어 있으며 국내 데이터 자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또한, SDGs 지표 데이터 중 ‘강도(robbery)’가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UN SDGs 지표 설명 자료에는 강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CTS 조사표에서 강도를 신체적 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6년 자료로 그 피해율이 성폭력과 강도는 0.1%대, 신체적 폭력은 (성별 차이가 있지만) 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CTS 설문지를 통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0>은 CTS 조사표 내 범죄피해조사의 범죄 유형별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행과 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성폭행과 강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UN SDGs 16.1.3 지표에 CTS의 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CTS 자료의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0> CTS 조사표 내 범죄유형별 개념 정의

조사표 번호	범죄유형	세부 내용
7.1.6	신체적 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체적 폭행으로 정의된) 상해나 해악을 가할 의도로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강도로 정의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7.1.8	신체적 폭행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상해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한 행위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심대한 신체적 해악을 가져오는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인 ‘중한 폭행’과 경미한 상해 또는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한 폭행’을 모두 포함함
7.1.7	강도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7.1.9	성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성폭행 ²⁰)으로 정의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간으로 정의된)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7.1.10	성폭행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적인 이유로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7.1.11	강간	유효한 동의 없이 위협, 유형력, 상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이익의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를 당한 사람의 비율

조사표 번호	범죄유형	세부 내용
7.1.12	정서적 폭력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괴로움을 경험하여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에 이르게 된 사람의 비율
7.1.15	신체적/성적 괴롭힘	지난 12개월(또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주: 1. 굵은 글씨는 현재 SDGs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데이터가 제공되는 범죄 유형
 2. 위 표에서 빠진 CTS 조사표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각 7.1.13 신체적 및 성적 폭력(physical or sexual violence), 7.1.14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violence)임

현재 CTS 사이트에서는 7번 섹션에서 조사된 각국의 범죄 유형별 발생비율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UN SDGs 지표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에 CTS 조사표 2번 섹션에서 공식범죄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한 폭행(serious assault)’과 ‘성폭력’에 대한 각국의 발생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검토는 유사통계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먼저 SDGs 16.1.3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료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UN은 16.1.3 지표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통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이다.²¹⁾ 이 조사는 1994년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경험 여부 및 피해양상,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2009년에 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403001호)가 되었고, 이후 명칭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a).²²⁾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조사전문업체가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한다. 2019년 조사 기준 만 14세 이상 약 6,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 ICCS에 따르면 ‘성폭행(sexual assault)’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강간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신체적 성폭행을 포함하여, 비 신체적 성폭행과 관음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도 포함한다.

21) 경찰청 ‘범죄통계’ 또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도 폭행 또는 폭력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발생건수에 제한되고 있어 인구 대비 발생 비율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UN 지표와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

22) 조사 명칭이 지나는 조사응답의 부담을 줄여 조사 협조율을 높이고 조사 명칭으로 인한 조사응답자의 잘못된 낙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보고서는 범죄피해조사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a, 2019b).

1만 3천 명의 응답자가 참여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조사표, 가구원조사표 그리고 사건조사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력범죄의 유형별 범죄피해 자료는 사건조사표에 응답한 응답자, 즉 가구조사표나 가구원조사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범죄피해자 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로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여러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대표 사건 1건으로 처리된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항목은 ‘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이 조사에서 폭력범죄는 ①강도, ②폭행, ③성폭력, ④괴롭힘 등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행이 SDGs 지표의 ‘신체적 폭력’이 된다. ‘폭행’은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한 위협 또는 협박으로, 실제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뻔했으며 별도의 탈취 피해는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형사정책연구원, 2019:120).

<표 3-11>은 이 조사에서 최근 조사된 폭행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조사가 개편된 2013년을 전후하여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피해건수는 7만 건 안팎으로 추정되며, 인구 대비 범죄 피해율은 0.15~0.16%에 머물고 있다. 이 자료는 UN이 권고하는 대로 직접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율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UN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UN DB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여도 근접한 값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나 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포털(CJJS) 그리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폭력범죄 피해율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성별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이는 피해 보고 표본수가 매우 적어 나타나는 현실적인 한계이다.

<표 3-1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폭행범죄 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추정)*

구분			2012	2014	2016	2018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폭행 피해건수		221,256	68,248	75,051	73,222
	인구 10만 명당 폭행 피해건수		515	155	161	161
	폭행 범죄피해율		0.52	0.15	0.16	0.16
UN 지표	신체적 폭력 범죄피해율	전체	0.1	0.2	0.2	-
		남	-	0.2	0.2	-
		여	-	0.1	0.1	

출처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형사정책연구원, 2019:134)

주: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추정)/만 14세 이상 인구수)×100²³⁾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까지는 추계인구를, 2018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범죄 피해율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CTS에 ‘신체적 폭력’, ‘강도’, ‘신체적 폭행’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UN 지표로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는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다만 UN 자료에서 (당초 지표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도’ 부분의 데이터도 제공되고 있어 이의 지속 제공 여부 및 자료의 정확성 및 시계열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관계 기관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은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실제로 강간(미수)이나 강간 이외의 성폭력으로 신체적 피해경험이 있었거나 무력으로 인한 성적 접촉 피해경험이나 공격, 위협이 없더라도 성적 접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형사정책연구원, 2019:120).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에서도 ‘성폭력’에는 ‘강간’과 ‘성추행’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⁴⁾ 다만,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성폭력’ 피해는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는 성폭력에서 제외되며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ICCS에서는 성폭행에 ‘비신체적 폭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성적 괴롭힘, 성적 성격의 협박, 관음²⁵⁾ 등을 포함하고 있어 UN 지표와 국내 통계 간의 범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²⁶⁾

<표 3-12>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와 UN 지표와의 성폭력 범죄피해율을 비교한 표이다. 2016년 자료를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소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UN 데이터베이스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현재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 자료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4) <http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25)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해당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통계청, 2016)

26) UN SDGs 지표에 한국 데이터에는 ‘강간’이 제외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자체에서 ‘강간’ 피해 항목에 응답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3-12>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

구 분		2012	2014	2016	2018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건수	74,482	56,890	35,489	73,169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건수	174	129	76	161
	성폭력 범죄피해율	0.17	0.13	0.08	0.16
UN 지표	성폭력 범죄피해율	1.5	1.1	0.1	-

출처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형사정책연구원, 2019:134)

주: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추정)/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유사통계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나타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살펴보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피해자 특성 통계를 통해 범죄 유형별 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UN은 SDGs 16.1.3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은 ICCS 범주 중 ‘신체적 폭행(assault)’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황지태 외(2016)는 ICCS의 폭행 분류는 국내 범죄명으로 폭력범죄 중 ‘폭행’과 ‘상해’로 연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통계의 상해는 ‘중한 폭행’과 폭행은 ‘경한 폭행’과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집계된 폭행 발생건수를 도출하면 <표 3-13>과 같다.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대분류(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등) 기준으로만 발표하고 있어 ‘폭행’에 관한 발생비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폭행의 성별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비율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²⁷⁾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공식적인 발생비율을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SDGs 지표 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해 경찰청(2019a)에서 적용한 인구 자료를 기초로 ‘상해’와 ‘폭행’을 합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발생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2013년-2017년간 0.36-0.42%로써 0.2% 안팎의 피해비율을 보였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자료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높았다. 경찰청 범죄통계가 실제 입건된 사건을 기초로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숨은 범죄를 포착할 목적의 범죄피해조사보다 실제 입건된 사건을 기초로 한 경찰청 범죄통계 비율이 높은 역전 현상은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앞서 보았듯이 경찰청 통계에서는 대표 피해자 1인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과

27) 다만, 발생건수와 관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의 ‘상해’, 즉 ICCS의 ‘중한 폭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CTS에 제공된 ‘중한 폭행(serious assault)’의 국내 데이터가 경찰청 자료와 동일한 데이터로 파악된다. 따라서 CTS 항목 중 섹션2의 범죄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경찰청 ‘범죄통계’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추정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조사의 숨은 범죄 포착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3-13> 경찰청 ‘범죄통계’ 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폭력	상해	62,342	55,884	50,281	48,005	50,028	44,611	39,766
	폭행	130,546	128,699	132,920	149,278	165,803	159,641	159,267
	소계	192,888	184,583	183,201	197,283	215,831	204,252	199,033
	발생률	-	0.36	0.36	0.38	0.42	0.39	
UN-CTS	중한 폭행	62,257	55,884	50,281	48,005	50,028	44,611	-

출처: KOSIS 경찰청, 범죄통계 (2020.8.11. 추출)

주: 발생비 : (폭행(상해, 폭행) 피해건수/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수(경찰청, 2019²⁸⁾))×100, 저자 작성

다음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의 성폭력 데이터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강력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체적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비신체적 성폭행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풍속범죄 등의 세부 분류까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자료 역시 연도별 피해자 집계와 성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발생비율까지는 보고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 중 피해자 특성별 자료에서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를 추출한 결과(<표 3-14>), CTS에서 발표하고 있는 섹션 2에 해당하는 성폭력 발생건수의 국내 데이터와 일치하고 있어,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CTS 섹션2에서 보고되는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앞서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율을 검토한 바와 같이, 성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청(2019a)이 적용한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직접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발생률이 0.04-0.05%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0.1% 안팎의 피해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신체적 폭력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의 경우인 것이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가 일반인들이 ‘경험한’ 범죄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청 범죄통계는 실제 ‘입건된’ 사건을 집계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성폭력

2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2013년 51,141,463명, 2014년 51,327,916명, 2015년 51,529,338명, 2016년 51,696,216명, 2017년 51,778,544명. (경찰청, 2019a)

범죄에 대한 신고 또는 사건 처리가 일상적인 경험치에 비해 매우 낮게 진행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14> 경찰청 ‘범죄통계’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폭력 (경찰청)	건수	19,670	22,310	21,055	21,286	22,200	24,110	23,478
	발생률	-	0.04	0.04	0.04	0.04	0.05	-
UN-CTS		19,619	22,310	21,055	21,286	22,200	24,110	-

출처: KOSIS 경찰청, 범죄통계 (2020.8.11. 추출)

주: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됨

2. 발생률 : 발생건수/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수(경찰청, 2019)×100, 저자 작성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SDGs 16.1.3 지표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등 세 가지 범죄 유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범죄에 노출된 비율을 보는 것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결과와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재 제공되고 있는 2014년 이후의 자료들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UN이 제시하는 지표 측정 방법론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 범죄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행정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노출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범죄유형에 대한 개념을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UN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폭행 범위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폭행’이라는 분류로 폭넓게 조사되고 있는데, 아직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상해’, ‘무상해’ 정도의 구분만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UN 지표가 성폭행 범위를 신체적, 비신체적 폭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료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료제공 시에는 소관 기관과 비신체적 폭력의 반영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UN 자료에 명시된 ‘강간’의 제외 사유 등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공 자료의 시계열과 성별 데이터 세분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3-1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2년 주기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자료

와 강도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원이 파악되지 않은 시계열 자료로, 성별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직 미제공되고 있는 항목과 이미 제공되고 있으나 UN 지표와는 무관한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아직 미제공되고 있는 항목으로는 ‘정서적 폭력’에 관한 사항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현재 UNODC 측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난 후 국내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UN 지표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강도’ 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강도’는 CTS 자료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UN SDGs 지표에서 보고자 하는 ‘신체적 폭행’ 자료와는 별개의 자료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각국의 자료가 UN DB에서 제공되고 있어 지속적인 자료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기구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제공의 검토사항 외에도, 실제 피해를 당해 공식 기관에 처리된 피해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활용이 필요하다. UN에서도 16.1.3의 지표를 통해 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실제 발생한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사 자료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대상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의 피해자 자료를 기초로 인구 대비 피해율을 계산해본 결과,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집계된 피해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피해율이 경찰청 통계에 비해 낮게 나온 반면, 성폭력의 경우 실태조사의 피해율이 실제 경찰청 통계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성폭력의 경험이 실제 신고되어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의 국내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경찰청 통계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피해율과의 비교를 통해 지표의 함의를 찾아낸다면 향후 이 지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범죄 두려움 느끼는 인구비율(SDGs 16.1.4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UN SDGs 지표의 16.1.4는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이다. 이는 성인 인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이 지표는 안전

을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다(장안식 외, 2013).

UN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 ‘범죄의 발생률’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지표는 실제 범죄를 경험한 것과는 독립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나타내며, 그간 범죄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의 생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미디어와 각 개인이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UNECE의 범죄 피해조사 매뉴얼(2010)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은 범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불만족 요인(저소득, 실업, 환경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높은 수준의 ‘두려움’은 곧 개인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 신뢰 등을 낮추는 요인 또는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²⁹⁾

UN SDGs 지표의 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하는 표준적인 질문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이다. 응답은 4점 척도(1=매우 안전, 2=안전한 편, 3=안전하지 않은 편, 4=매우 안전하지 않음)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의 항목으로 ‘모름’ 또는 ‘혼자 밤에 다니지 않음’ 등 비해당 항목을 허용한다.³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응답 항목 중 ‘매우 안전’과 ‘안전한 편’을 응답한 응답자의 수를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분모에 인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표본조사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16.1.4 지표는 대체로 각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130여 개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한 항목으로 이를 조사한다. 이 지표의 소관 국제기구인 UNODC는 앞서 설명된 CTS 조사 체계 안에서 자료를 받아 국가별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각국에서 받는 CTS 조사표로 잠정치와 확정치 등 수정된 값까지 조사하며, 최종 데이터는 국제기구 자체의 별도 수정 없이 제공되는데 대신 이에 앞서 최

29) 지표의 사회맥락적 성격으로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질문하는 양식도 각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어두운 시간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니까?’라고 질문(UNODC, 2009)하는 반면 호주의 경우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낮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한다. 캐나다는 ‘밤에 혼자 동네를 걷는 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하며 핀란드는 ‘당신의 동네에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을 묻기도 한다.

30) 2018년 개최된 CTS 연락관 및 국제범죄분류 기술자문그룹 회의에서는 당초 메타데이터(2016)에 제시된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걷지 않음’이라는 응답 항목의 해석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신 ‘해당 없음(not applicable)’을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 값을 제외하는 것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낮’과 ‘밤’을 분리하여 질문하는 것도 제시되었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개념이 모호하여 ‘살고 있는 집의 10분 거리’라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직장 주변’의 안전을 질의하는 문항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UNODC, 2018).

중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검토 과정도 거친다.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내 데이터의 값은 <표 3-15>와 같다. CTS 홈페이지 상에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항목의 국가별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 다만 UN SDGs 지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 데이터의 값이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국내 조사 결과와 동일하여 국제 기구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제출한 데이터가 별도의 수정 없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6.1.4 지표는 세분화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UN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 데이터의 전체 값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CTS의 조사표에서도 성별 자료만 요구할 뿐 연령별 자료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표 3-15>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16.1.4 지표 국내 데이터

구분	데이터			출처	성별/연령별 세분화
	2014	2016	2018		
혼자 동네 걸을 때 안전	54.1	58.6	-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안전실태조사	X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2020년 8월 25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CTS를 통해 SDGs 지표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 통계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이다.³¹⁾ 이 조사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그 유형별 특징 등을 알아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항목은 두 가지 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하나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항목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항목이다. 두 번째 항목이 UN SDGs 및 CTS에서 요구하는 지표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이다’라는 중간 값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일반적 범죄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이라는 통계로 ‘두렵다’고 느끼는 비율을 보고하는데, 응답 항목 중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고한다.

설문 항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지표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의 방향성이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질문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

31) UN SDGs 데이터베이스는 16.1.4 지표 데이터의 출처를 UNODC라고 기입한 후 주석에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조사임을 추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기본으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상황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반면, 글로벌 지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를 묻는 것으로 질문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발표되는 반면, 글로벌 지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안전하게 느끼는 비율을 보고한다.

두 번째로, 척도의 문제다. 글로벌 지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 값이 없는 4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간 값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게 ‘두렵다’고 답한 인구를 보고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를 보고하는 두 측면에서 모두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16>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일반적 범죄 두려움의 비율 결과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 공표자료에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로 보고한다. 반대로 글로벌 지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안전함을 느끼는 인구 비율’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 : 54.1%, 2017년 : 58.6%). 이 데이터는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 결과를 반영하여 발표한 데이터로 UN에서 권고하는 인구 비율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는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여, 자료제공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6> 일반적 범죄 두려움 (밤에 동네 골목길 혼자) 비율(%)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3	21.2	30.5	18.1	23.1	7.2
2015	21.1	33.0	23.8	19.2	2.9
2017	22.6	36.0	20.8	17.4	3.3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2020.7.31. 추출)

다만, 보고 연도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안전실태조사는 매 홀수 해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대상 연도를 전년도(짝수 해)로 한다. 이는 조사 항목 중 ‘전년도에 경험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범죄 발생과 관련된 항목은 조사 대상 연도(짝수 해)로 발표된다. 그러나 ‘범죄 두려움’과 같은 항목은 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CTS 보고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일관된 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세분화된 자료의 제공 가능성이다. ‘국민안전생활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공표 시점에는 전체 응답자 비율만 제시할 뿐³²⁾, 성 및 연령별 데이터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에서는 2017년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의 세분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분화 데이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표 3-17>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성 및 연령별 ‘일반적 범죄 두려움’에 대한 데이터이다. 계산은 앞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방식³³⁾으로 집계하였다. 남성은 70%대를 전후로 높은 반면, 여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40% 초반의 비율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고 60대가 가장 높아, 젊은 연령대보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혼자 밤에 동네 골목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성별, %)

구분	2013	2015	2017
전 체	51.7	54.1	58.6
남 성	71.2	68.0	74.9
여 성	32.0	40.3	42.6
10대	40.8	41.9	44.9
20대	44.7	49.8	52.5
30대	46.4	50.9	58.4
40대	51.7	54.1	61.2
50대	54.2	56.1	60.0
60대	64.5	59.9	64.4
70대 이상	65.3	56.9	62.3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2020년 7월 31일 추출)

32)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가지표사이트(www.index.go.kr)에서도 별도의 세분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33) 응답 항목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계산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SDGs 지표 16.1.4에 대한 국내 데이터 검증결과,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방식, 추정방식 등에 있어 SDGs 16.1.4 지표의 국내 데이터로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척도 차이의 문제, 국내에서 공표된 자료의 발표시점과 UN 글로벌 DB에서 제시된 조사 연도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 및 연령별 데이터의 제공 여부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16.1.4 지표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일반적인 두려움에 대한 조사문항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적받아왔다(장안식 외, 2010; 조상현 외, 2017). 특히, 일반적인 두려움을 측정하는 이 지표의 경우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두려움에 국한되고 실제 피해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또한, 이 지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에 있으므로 ‘폭력’과 ‘성폭력’ 등 보다 구체적인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³⁴⁾ 이러한 항목은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경험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등, 보다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조지표로의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4)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에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봐 두렵다’ 등의 항목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되어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9a).

제5절 범죄신고율(SDGs 16.3.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3.1은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이다. 이 지표는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는 세부목표 16.3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로 지난 12개월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중 범죄피해를 신고한 비율을 보는 것이다.

이 지표는 ‘공정한 법치주의’ 이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경찰 등 국가 기관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고율은 또한 실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며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³⁵⁾

UN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16.3.1 지표에서 중점을 두는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및 국가의 공식적인 조정기구들이 해당되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 내 협의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구도 국가 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UN은 ‘사법 접근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문화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16.3.1 지표는 범죄에 국한된 법적 제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민간인 사이의 분쟁, 행정적인 분쟁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이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3.1의 지표는 각국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지표 소관 기구는 UNODC이다. 지표 세분화는 ‘성별’, ‘범죄유형별’, ‘민족별’, ‘이주상태별’, ‘국적별’ 등 다양하게 작성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범죄유형별³⁶⁾, 성별로 구분된 지표만 제공되고 있다. CTS 조사표에도 이 두 가지의 구분으로만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어 그 외 세분화 영역은

35) UN 메타데이터 :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3-01.pdf>

36) UNODC가 조사하는 ‘범죄유형’은 총 7가지로, ①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②강도(Robbery), ③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④성폭력(Sexual violence), ⑤성폭행(Sexual assault), ⑥강간(Rape), ⑦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Physical or sexual violence) 등이다. 이 중 SDGs 지표로는 신체적 폭행(Assault), 강도(Robbery), 성폭행(Sexual assault)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 중이다.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다.

신고율에 관한 이 지표도 16.1.3 지표의 정서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UNODC 차원에서 아직 방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에 진행된 CTS 기술자문회의(UNODC, 2018)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아닌 비정부기구(NGOs) 등이 범죄 신고기관이 될 경우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로 다른 범죄 유형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범죄 등은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를 다른 범죄와 통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성범죄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표 3-18>은 현재 UN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내 데이터의 현황을 보여준다. 신체적 폭행을 제외하고 강도와 성폭행 모두 3개년(2012, 2014, 2016)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성별 데이터가 완전하게 제공되는 것은 신체적 폭행과 강도의 2개년 자료뿐이다. 성폭행의 경우 2016년도 자료부터 여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여성에게만 질문하여 전체와 여성 데이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UN SDGs 16.3.1 범죄유형별 경찰 신고율

구분	신체적 폭행			강도			성폭행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전체	-	10.9	31.2	16.6	54.1	45.0	8.4	5.4	13.7
남성	-	16.4	32.7	-	56.6	37.0	-	-	-
여성	-	4.9	28.0	-	0	49.9	-	-	13.7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7월 31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현재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에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CTS로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안전실태조사’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안전실태조사에는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의 하위 문항으로 경찰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신고 여부 외에도 ‘경찰 신고 이유’, ‘경찰의 조치 여부’, ‘경찰의 조치 내용’,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경찰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경찰 조치에 대

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경찰 서비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에서는 범죄 유형별로 경찰의 신고 여부 결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범죄유형별 총계 데이터만 볼 수 있을 뿐 세분화(성별, 연령별 등)된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자료의 공개 시점도 2016년 자료가 최신 자료다.³⁷⁾

<표 3-19>는 국민안전실태조사에서 집계된 범죄유형별 경찰 신고율과 이를 UN SDGs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신체적 폭행과 강도 범죄의 신고율은 2개년(2014, 2016) 자료가 UN 데이터와 일치한다. 성폭행 관련 지표가 국내 자료는 '성폭력'의 개념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을 제외하고 UN과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일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9> 국민안전실태조사의 범죄 유형별 신고율 및 UN 자료와의 비교(비율, %)

구분	신체적 폭행			강도			성폭력*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국내 통계	40.5	10.9	31.2	29.8	54.1	45.0	8.4	4.8	13.7
UN 자료	-	10.9	31.2	16.6	54.1	45.0	8.4	5.4	13.7
일치여부	불일치	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사이트 (2020년 8월 4일 추출)

주: *: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는 강간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데이터만 제공 가능. UN은 성폭행(sexual assault)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지정(2009년)된 후, 몇 차례 개편(2009년, 2013년)되면서, 이 기간의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 일관성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9). 따라서 2012년 자료는 개편 전 자료라 당시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료가 국내 어느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도 자료부터는 대체로 일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성별 데이터의 제공과 정확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유형별 신고율에 대한 성별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성별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를 소관 기관과 협의할 필요

37)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범죄 유형을 '폭력범죄'와 '재산피해'로만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신고 여부는 전체 응답 비율만 제시하고 있다.

성이 있으며, 제공 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UN SDGs 데이터에 제공되고 있는 자료 중 강도의 성별 신고율과 성폭행 데이터의 성별 자료(남성 자료의 부재)³⁸⁾에 대해서는 자료의 정확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절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SDGs 16.3.2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3.2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교도소(prison), 형사처벌기관(penal institutions) 혹은 구치소(correctional institutions) 수용자 중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수용되어 있는 자의 비율을 말한다(The total number of persons held in detention who have not yet been sentenc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in detention, on a sepcified date). 단, 입국자격 심사 등의 사유로 억류된 자와 같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수용된 비형법(non-criminal) 수용자는 제외된다.

UN이 1955년에 채택한 ‘국제연합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명시하듯이 교도소 수형자와 미결구금자에 대한 본질적 존엄성과 인간으로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기본 권리에 따라 법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미결구금은 형사소송절차상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미결수금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자격과 미결석방 여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교도소 내의 형을 받지 않은 수감자 수는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김지선 외, 2016:67).

UN SDGs와 CTS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란, 유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재판 전(pre-trial)이거나 재판에 붙여지지(untried) 않은 자를 의미한다. 공판 중이거나 공판 전에 수감된 자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반면에 형의 선고를 받고 상소 판결을 기다리거나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편, 1심 판결 혹은 최종 판결 후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정의되며, 이 지표에서는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8) 현재 UN 데이터에 여성 데이터만 제공되는 것은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성폭력 신고율 응답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UN SDGs 데이터베이스 내 형 미선고자 비율은 CTS를 출처로 한다(<표 3-21> 참고). 각 연도 수치는 최근 3년 평균값이다. 2005년 데이터는 2003~2005년 평균, 2015년 데이터는 2013~2015년 평균, 2018년 데이터는 2016~2018년 평균이다.

<표 3-21> UN SDG 16.3.2 지표 내 한국 데이터: 형 미선고자 비율(%)

구분	2005	2015	2018
비율	34.2	35.2	35.4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 (2020년 8월 25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위 지표에 해당하는 국내의 데이터는 법무부 내부자료로 산출된다. 현재, 통계청 e-나라 지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통계가 그것이다.³⁹⁾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3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관련 용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표 3-22>는 법무부의 1일 평균 기결 및 미결수용자 현황과 같은 해 CTS에 보고된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총합으로 한 총 수용자 수와 미결수용자 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CTS와의 수치 차이는 기준시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연평균 수치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CTS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료 제공과정에서 법무부는 12월 31일 자료를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편,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비율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통계치는 2016+2017+2018 3개년의 평균치 35.4%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www.index.go.kr

<표 3-22> 형 미신고자 비율에 대한 국내와 UN-CTS 통계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UN-CTS	총 수용자	51,761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형 미신고자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법무부 통계	총 수용자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미결수용자	17,377	19,267	20,877	20,292	18,871	19,343

국내에서 제공된 통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CTS 및 SDGs 지표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CTS의 형 미신고자와 국내 미결수용자 간에는 상소제기 기한 내에 있거나 상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포함을 두고 차이가 있다. CTS 및 SDGs 지표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만을 본 지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최종 확정인 아니라면 미결수용자에 포함된다.

3.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국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미결수용자 통계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와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최종 확정인 아닌 자를 구별하는 세분화된 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결수용자 통계에서 세분화 가능범위는 아래의 <표 3-23>과 같이 피의자와 피고인이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UN SDGs와 CTS 범주에 포함되나,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형의 선고를 받고 상소를 기다리는 수용자라고 하면 UN SDGs 지표 16.3.2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3-23> 형 미신고자 비율에 대한 국내와 UN-CTS 통계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수용자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미결수용자 전체	17,377	19,267	20,877	20,292	18,871	19,343
피의자	747	847	864	753	644	632
피고인	16,630	18,420	20,013	19,539	18,227	18,711

제7절 공무원 뇌물 범죄 비율(SDGs 16.5.1 지표)

1. 글로벌 정의 및 주요 개념, 데이터

지표 16.5.1은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이다. 즉, 이 지표는 조사 대상 기간 중 공무원을 최소 1번 이상 접촉한 사람 중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 1번 이상의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요구받았던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세부 목표 16.5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이다.

부패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UN은 법치주의 사회를 해치고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서의 부패를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ICCS에 따르면, 뇌물은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단체의 직원에게,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능동적, 수동적,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약속, 제공, 공여하거나 유혹, 수락하여 그들의 임무 수행 중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Promising, offering, giving, soliciting, or accepting an undue advantage to or from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in order that the person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로 정의된다. ICCS는 제법 폭넓은 형태의 행위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UN은 SDGs 목표에서 이를 보다 측정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공공 영역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뇌물을 주거나 요구받은 행위’에 제한하고 있다. UN은 이 지표가 ‘뇌물을 요구받는 비율’까지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기존의 각국 또는 국제기구들의 조사가 뇌물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표의 소관 국제기구는 UNODC이며 공무원 대상 뇌물 관련 항목은 CTS 조사표 내 범죄피해조사 섹션(7섹션, 7.1.4)을 통해 수집된다. <표 3-23>은 UN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데이터 현황이다. 2014년도 데이터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그간의 값은 ‘0’으로, 2014년의 값만 0.03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3-23> UN SDGs에 수록된 지표 16.5.1 국내 데이터: 뇌물 발생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0	0	0	0	0	0	0.03

출처 : UN SDGs Global Database(2020년 7월 31일 추출)

2. 국내 제공통계 현황 및 수치검증

UN 데이터베이스에서 16.5.1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로는 UNODC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16.5.1 지표는 CTS에서 범죄피해조사 내 항목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범죄피해조사에서 뇌물 항목은 조사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의 범죄피해조사는 2년 주기로 수행되는데 <표 3-23>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연간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위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가 범죄피해조사가 아닌 다른 통계임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도 국내의 CTS 책임연락관을 통해 보고된 자료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공식통계 중에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또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 뇌물 범죄의 건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16.5.1의 지표와는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의 정확한 자료원을 다시 정리하여 올바른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유사통계 검토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국내에 16.5.1 지표와 대응할 수 있는 유사한 통계를 검토해보았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범죄와 관련된 국내 유사한 통계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부패인식도조사’와 ‘청렴도 평가’가 있다. 두 조사 모두 통계청의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패 관련 조사로 검토의 의의가 있다.⁴⁰⁾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조사’를

40)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도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항목이 있으나, 이 조사는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6.5.1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사 대상자가 차이가 있으며, 16.5.2 지표 유사 통계로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인, 기업가, 각 부문별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약 4,500명으로, 총 4개 부문(사회분야별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 부패 경험,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과제)에 걸친 부패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다.

<표 3-24>에서 소개된 조사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조사에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설문 문항은 “선생님께서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이다. 응답 문항은 ‘있다’,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응답자 그룹에는 모두 제공되는 항목이다.

<표 3-2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사회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및 발생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부패 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과제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1)

2019년 조사결과(<표 3-25>)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6%, 기업인 1.4%, 외국인 2.3%로,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는 응답자 그룹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조사 결과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국민	2.7	2.9	3.0	2.1	2.0	2.4	1.9	1.4	0.5	0.6
기업인	11.1	6.7	1.6	4.9	4.3	3.9	3.1	2.3	1.6	1.4
외국인	5.0	0.5	3.0	3.0	4.3	1.0	0.8	0.3	2.0	2.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1)

권익위의 부패인식조사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접대 등의 제 공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조사되어 16.5.1의 지표가 요구하는 지난 1년간의 뇌물 공 여 경험이 포함되어 지표 정의 자체의 정합성은 있다. 다만, UN 지표가 ‘지난 1년간 공직자를 업무상 접촉한 사람 중’으로 그 분모 데이터를 한정하고 있어서, 이 부문이 충분히 반영되는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즉, 권익위의 조사에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는 공무원을 접촉했지만 뇌물을 주지 않은 경우와 공무원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UN 지표가 측정하려는 ‘접촉자 중 뇌물 공여자’의 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는 국가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공직사회 의 부패 현황과 경험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해온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등 다양한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 물 공여 경험을 파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보는 데에도 매우 활용도가 높은 조 사로 볼 수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또 다른 부패 관련 조사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 는 ‘청렴도 평가’가 있다. 1999년 당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고로 개발되어 2002년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이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이 법 제2조에 명시된 ‘개별 공공기관’으로 각급 행정기관, 교육 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직 유관단체, 사립학교 등이며, 2019년 기준 총 60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청렴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개념을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라고 규정하며 ‘부패행위’의 정의를 관련 법령⁴¹⁾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22).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 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 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 두 항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넷째 「청탁금 지법」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등의 의무·금지·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탁금지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공공기관 부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청렴도 평가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조사하고 있는데, ①외부청렴도, ②내부청렴도, ③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그리고 각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 및 실제 부패사건발생 현황 등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최종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 SDGs 16.5.1 지표와 유사하다.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 업무(인사, 예산 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와 정책 관련자가 조사 대상 기관의 정책결정 과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SDGs 지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청렴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조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부패 인식’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책임성, 공개성 등이며 ‘부패 경험’은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 수준을 의미한다(권익위원회, 2020:49). 이 중 ‘부패 경험’은 조사 대상기간 중 특정 업무로 조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을 1차적으로 질의한 후, 이 과정에서 경험한 부

패 경험을 조사한다. 부패경험의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특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가’이다(<그림 3-4> 참조). 있었다면 ‘제공한 횟수’, ‘제공한 금품의 합계 금액’ 등을 묻고, 이를 제공한 ‘시기’와 ‘제공 사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c, 부록 2 참조).

이 항목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9년 청렴도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019년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설문조사 총 대상자는 약 24만 명이었다. 이 중 외부청렴도 조사 대상자(국민)은 약 16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는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졌다.

자금부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 ☐ (상위 하위기관명)의 ☐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1년간 ☐ (상위 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에게 직접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다음 각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6)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의 재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7)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식사, 집대, 국내외여행 등의 재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8)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숙박교통 편의, 행사접찬, 업무지원, 담당 직원의 인인척 채용청탁, 금융 부동산 거래 특혜 등의 재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그림 3-4> 부패경험 측정 항목

권익위원회는 ‘부패경험률’이라는 지표로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표 3-26>은 2019년 조사결과 및 2015년도부터의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결과, 2019년에 공무원을 접촉한 국민 중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5%로 전년도(0.7%, 2018년)에 비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권익위원회, 2019b).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부패경험률은 ‘금품’, ‘향응’, ‘편의’ 각각의 부패경험률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각각의 수수 형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⁴²⁾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하고 있다(권익위원회, 2019b).

<표 3-2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외부청렴도)’ 결과 (단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부패경험률	1.7	1.8	1.0	0.7	0.5
금품	0.7	0.7	0.46	0.24	0.18
향응	0.76	0.84	0.36	0.27	0.18
편의	0.23	0.24	0.19	0.16	0.12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b)

데이터 검증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조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청렴도 평가의 부패경험률을 비교해 보았다(<표 3-27> 참조). 두 조사 간의 차이는 ‘공직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보는가에 있는데, 두 조사의 부패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 경험의 추이도 두 조사 모두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7>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외부청렴도)’ 결과 및 ‘부패인식도조사’와 비교(단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청렴도 평가	부패경험률	1.7	1.8	1.0	0.7	0.5
부패인식조사 (일반인)	부패경험률	2.4	1.9	1.4	0.5	0.6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a, b)

4.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

이 절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뇌물을 공여한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 16.5.1에 대해 국내 데이터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UNODC에서 UN SDGs 데

42) 그러나, 세 가지 경험에 대한 중복률이 부패경험률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전제되어 계산되었다.

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자료로서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공식 CTS 연락관을 통해 보고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담당자 확인 결과 나타났다. 이 지표의 경우 범죄통계 등 기존의 행정 자료 내에서 자료원을 찾게 되면, 뇌물 수수에 대한 범죄 건수를 중심으로만 파악이 가능하여 지표와 정확히 매칭하는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공직사회 부패와 관련되어 권익위원회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 온 두 조사(부패인식도조사, 청렴도평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조사의 데이터 값에서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의 추세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청렴도평가에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 항목이 SDGs 지표가 요구하는 ‘공직자와의 접촉 경험자 중 부패 경험 비율’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규모 및 방식에 있어서도 부패인식도조사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부패 경험 및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 부패 경험을 측정하는 데 더욱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인식도조사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후 인구대상그룹별 분석 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있어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사전에 소관 부처와의 면밀한 협의와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8절 국내 및 국제기구 통계 개선방안

지금까지 CTS 자료로 모니터링되는 6개 SDGs 지표에 대한 한국 데이터를 검증해 보았다. <표 3-27>은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국내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 제공된 수치가 CTS를 거쳐 UN SDGs에 제공되고 있었다. 국내 수치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여 국가 통계와 글로벌 정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치의 정합성과 별도로 모든 지표에서 개념 및 측정방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의 경우, 글로벌 정의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제공된 통계는 살인기수 건별 대표 피해자 정보이며, 살인기수 건은 발생시점이 아닌 경찰청에 접수되어 사건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국내의 형법 분류 체계에 따라 강도 및 강간살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과소집계의 가능성이 있다.

형 미선고자 비율의 경우에도 수용자 중 형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이 최종 확정인 아닌 경우의 포함 여부를 두고 개념 차이가 발생하였다. UN에서는 형의 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나, 국내 분류체계에서는 그 형의 최종 확정 여부 기준으로 데이터

가 생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형 미신고자 비율이 과대로 계상되고 있었다.

<표 3-27> 6개 SDGs 범표지표 검증 결과

번호	출처확인	수치정합성	개념 및 측정정합성	기타
16.1.1 고의적 살인 범죄 피해자 수	경찰청 범죄통계	일치	불일치 (대표피해자 정보, 강도 및 강간살인 제외, 원표승인시점 기준)	성별 미상 정보 제공 필요
16.1.3 폭력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	행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2014년 이후 자료만 일치	불일치 (SDG-CTS 간: 강도 CTS-범피: 비신체적 성폭력, 강간)	성별 데이터 수치 삭제 필요(신뢰성) 강도자료 불분명
16.1.4 범죄 두려움	행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일치	일치 (방향성 차이, 척도 차이)	성·연령별 세분화 제공 가능
16.3.1 범죄신고율	행정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일부 시점별, 범죄유형별 일치	불일치 (성폭력 개념)	성별 데이터 수치 삭제 필요(신뢰성)
16.3.2 형 미신고자 비율	법무부 내부자료	일치	불일치 (최종판결이 아닌 자의 포함 여부)	-
16.5.1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	불확실	확인불가	확인불가	유사통계 제안

이러한 검증결과를 세 가지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고 이를 활용한 국제기구의 자료도 분명한 경우다. 이 경우, 지표의 국내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지표에 대한 UN 정의와 국내통계 정의 간에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 통계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되어 측정된 것이며, 특히 공식범죄통계의 경우 국내 형법체계에 기반하여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수용할 만한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데이터 제공 시 보다 자세한 메타데이터를 국제기구에 보고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나 형 미신고자 비율이 그 예이다. 그런데, 국내의 이러한 데이터 수집 경향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면 CTS 조사방식 개념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국내에 한정된 상황이라면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조사를 일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국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선은 국내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두려움 지표가 이 예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안전생활실태조사에서 측정된 범죄 두려움 데이터가 CTS에 제공 중인데, 글로벌 정의와 비교할 때 질문의 방향(긍정 vs 부정)과 척도 유형(4점 vs 5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죄 두려움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향과 척도로 상당기간 조사되어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 상황이다. 특히, 중간값을 포함한 5점 척도의 사용은 한국적 맥락이 반영된 산물이다. 이 경우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 두려움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두려움 항목 측정 방안에 대한 개선 과정에서 질문의 방향 등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보통’이라는 중간값 대응 방안으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두려운 편에 더 가까운지 두렵지 않은 편에 더 가까운지 추가질문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자료원은 명확하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항목이 국내 자료원의 어떤 항목을 활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폭력범죄 노출 비율(지표 16.1.3)과 범죄신고율(지표 16.3.1)이 여기에 해당한다. 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하위 범죄유형인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개념이 UN SDGs, CTS 그리고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행, 강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기관 간 설명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UN이 각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는 그 내역이 명시되지 않아서, 해당 지표의 데이터로 활용된 국내 데이터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활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성폭력과 강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일차적으로 UN SDGs와 CTS 간의 범죄유형에 대한 개념 통일이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도 범죄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더라도 보다 적합한 국내 자료원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유사통계를 제안하였다. 공무원 뇌물수수 비율(지표 16.5.1)이 그 예이다. 현재 UN SDGs에서 제공하는 뇌물수수 데이터는 국내 자료원이 명확하지 않아, 그 데이터의 정확성 및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조사해온 부패인식조사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지표의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통계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제안하였다. 두 통계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상황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개선

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도 여럿 발견되었다.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에서 성별 불상 건수 혹은 전체 건수를 데이터 서비스 과정에 포함하는 것, 범죄 두려움 지표에서 국내외 조사 연도를 일치시키는 것과 성 및 연령별 세분화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성별 세분화 데이터의 경우 빈도수가 매우 낮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하는 것 등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을 하여 CTS 관련 SDGs 지표에 대한 국내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결 론

이번 연구의 핵심은 CTS 체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제공된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정의 및 측정방식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여 SDGs 이행점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CTS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UNODC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2012년부터 각국 범죄통계 담당기관을 책임연락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 연락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며, 6개 관계기관 데이터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CT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2016년 이후부터 SDGs 범죄분야 모니터링에도 활용되고 있다. CTS에서는 살인, 폭력범죄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47개 세부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6개 통계가 SDGs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 지표는 고의적 살인범죄 피해자 수, 폭력범죄에 노출된 인구비율, 범죄 두려움 비율, 범죄신고율, 형 미선고자 비율,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이다.

공무원 뇌물범죄 비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국내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 제공된 수치가 그대로 CTS를 거쳐 UN SDGs에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치의 정합성과 별도로 모든 지표에서 개념 및 측정방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내 통계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되어 측정된 것이며, 특히 공식범죄통계의 경우 국내 형법체계에 기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수용할 만한 정도인지, 혹은 더 적합한 데이터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황, 즉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데이터 시계열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제언해 보았다. 그 내용은 국내와 국제기구 각각에서 진행할 상황과 즉각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 연구에서 해당 국가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개별 국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히 대응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내 데이터가 제공되어 국가 간 비교 및 글로벌 현황

점검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리된 결과를 SDGs 범죄지표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관련된 통계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선된 통계가 어떠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외(2018).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 년도 연구**, 통계청.
- 강소영 외(2017).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홍영오(201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국민권익위원회(2019a). **부패인식도조사 종합결과**,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2910&currPageNo=1&conflId=36&conConflId=3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 국민권익위원회(2019b).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별첨),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NDAYNTZfMg%3D%3D>
- 국민권익위원회(2019c).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지**.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NDAYNTVfMg%3D%3D>
- 국민권익위원회(2019). **부패인식도조사 종합결과**,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2910&currPageNo=1&conflId=36&conConflId=3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 국민권익위원회(2020).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 검찰청(2019a). **범죄분석, 통계이용자정보보고서**.
- 검찰청(2019b). **범죄분석**.
- 경찰청(2019). **범죄통계**.
- 경찰청(2019). **경찰청범죄통계, 통계정보보고서**, 경찰청.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35&confmNo=135001&kosisYn=Y>
- 김지선 외(2016). **한국의 형사정책과 범죄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8).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탁종연, 황정인(2009).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2019). **범죄백서**.
- 법원(2020). **사법연감**.
- 장안식, 정혜원, 김준호(2010).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81-394.

- 조상현, 고미정, 이도선(2017).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설명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1-3, 103-124.
- 통계청(2016). **국제범죄분류**(번역본). 통계청.
- 통계청(2019). **사망원인통계 이용자정보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2019).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a).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b).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umann & Thomas(2018). *UN-CTS/Eurostat Data Collection in Germany* (First Global Meeting of Focal Points of the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9-11 May 2016, Vienna)
- Bisogno & Enrico(2016). *New Information Need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Homicid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CTS First Global Meeting of Focal Points of the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9-11 May 2016, Vienna))
- Bisogno & Enrico(2018). *Homicid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Joint Second Global Meeting of UN-CTS Focal Points, Lima Peru from 07-08 June 2018)
- Didier & Dupre(2016). *Joint Eurosta-UNODC data collection: Implementing revised CTS* First Global Meeting of Focal Points of the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9-11 May 2016, Vienna)
- Jandl & Michael(2018). *The revised UN-CTS: introduction and selected results of first data collection* (Joint Second Global Meeting of UN-CTS Focal Points, Lima Peru from 07-08 June 2018)
- IAEG-SDGs(2019a). *Guidelines o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ODC(2010). *Manual on Victimization Surveys*., UNODC.
- UNODC(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
- UNODC(2016). *Report of the First Global Meeting of Focal Points of the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 held in Vienna from 9-11 May 2016*.
- UNODC(2018) *Report of the Joint Second Meeting of UN-CTS Focal Points and ICCS Technical Advisory Group held in Lima Peru from 07-08 June 2018*.
- UN(2018a).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 2018: Data File*".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CTS/CTS_2018_English.xlsx

UN(2018b).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 2018: Metadata File.*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CTS/CTS_2018_Metadata_English.xlsx

[UN SDGs 지표 메타데이터 링크]

16.1.1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1-01.pdf>

16.1.3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1-03.pdf>

16.1.4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1-04.pdf>

16.3.1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3-01.pdf>

16.3.2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3-02.pdf>

16.5.1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6-05-01.pdf>

[주요 사이트 링크]

UN SDGs Global Database : 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 <http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부 록 1

UN-CTS 조사표 개요 부분 (예시, 2018년 조사 기준)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UN-CTS) - 2018																		
DATA FILE																		
• Completion of this questionnaire requires the appointment of a focal point/coordinating officer in each country. • The focal point/coordinating officer should distribute the questionnaire to the relevant police/law enforcement agency, prosecution, court, prison/probation services, authority responsible for victimization surveys, and/or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within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N-CTS questionnaire. The focal point is then responsible for returning the completed, consolidated response to UNODC. • Please ensure that contact details of the focal point/coordinating officer are correctly provided in the space below.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Name of coordinating officer:</td> <td></td> </tr> <tr> <td>Functional title:</td> <td></td> </tr> <tr> <td>Agency:</td> <td></td> </tr> <tr> <td>Street:</td> <td></td> </tr> <tr> <td>City/state/country:</td> <td></td> </tr> <tr> <td>Email address:</td> <td></td> </tr> <tr> <td>Telephone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td> <td></td> </tr> <tr> <td>Fax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td> <td></td> </tr> </table>			Name of coordinating officer:		Functional title:		Agency:		Street:		City/state/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Fax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Name of coordinating officer:																		
Functional title:																		
Agency:																		
Street:																		
City/state/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Fax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																		
The consolidated response should be returned no later than 15 November 2018																		
Transmission of the UN-CTS response should preferably be completed via the secure online portal. To use this system for transmitting the UN-CTS questionnaire, please go to https://cts.unodc.org and enter the password provided in the note verbal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for uploading the questionnaire.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Requests for any clarifications or further information should be addressed to:</td> <td style="width: 50%;"> Data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Unit Research and Trends Analysis Branch Division for Policy Analysis and Public Affairs Email: cts@un.org Telephone: +43-1-26060-4998 </td> </tr> </table>			Requests for any clarifications or further information should be addressed to:	Data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Unit Research and Trends Analysis Branch Division for Policy Analysis and Public Affairs Email: cts@un.org Telephone: +43-1-26060-4998														
Requests for any clarifications or further information should be addressed to:	Data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Unit Research and Trends Analysis Branch Division for Policy Analysis and Public Affairs Email: cts@un.org Telephone: +43-1-26060-4998																	

UNITED NATIONS
DATA FILE
NATIONS UN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he UN-CTS consists of two parts:

1. Data file - divided into 7 Data Sections + Definitions Index

In the UN-CTS, core variables are requested each year, while rotating variables alternate in a two year cycle. The table below indicates the rotating structure and a breakdown of the sections, variables and corresponding law enforcement or criminal justice agency responsible for its completion.

2. Metadata file - divided into 8 sections

The metadata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data provided in the UN-CTS and collects information on definitions and counting rules used.

Please note: Completion of the Metadata File will only be requested once. Thereafter the Metadata File will only have to be updated in case of changes in data

TABLE A: UN-CTS Overview

Sheet name	Annual variables	Year 1	Year 2	Completion by
1	Intentional Homicide	Intentional homicide offences;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offences;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sex, V-P relationship, situational context and mechanism of killing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sex and age, citizenship, and in three largest cities; Intentional homicide perpetrators by sex and age, citizenship, and recidivist status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2	Violent Crimes	Serious assault; Robbery; Kidnapping; Sexual violence offences by type	Serious assault victims by V-P relationship and sex; Sexual violence victims by V-P relationship and sex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3	Other Crimes	Drug-law offences by type; Corruption offences by type; Smuggling of migrants; Trafficking of weapons and explosives;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criminal group; Participation in a terrorist group; Financing of terrorism	Burglary; Theft; Motor-vehicle theft; Fraud (plus cyber-related); Money laundering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4	Criminal Justice System (CJS) Process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ersons prosecuted, persons convicted and persons held for; Intentional Homicide; Bribery; Rape; Drug possession; Drug trafficking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ersons prosecuted, persons convicted and persons held for; ICCS level 1 categories	ALL: Police, Prosecution, Courts, Prisons
5	Prisons	Persons held by sex, age status and citizenship; Persons held by sentencing status and sex; Unsensitized persons held by length of detention	Mortality in prison by type	Prison/Probation Services
6	Criminal Justice System (CJS) Personnel & Capacity		Police personnel by sex; Police personnel by function; Prosecution personnel by sex; Professional Judges or Magistrates by sex; Prison staff by sex; Prison staff by function; Official Capacity of adult/juvenile prisons; Number of prison facilities	ALL: Police, Prosecution, Courts, Prisons
7	Victimization Survey	Results and methodology of crime victimization surveys conducted		NSO or authority responsible for victimization surveys

BEFORE COMPLETION of the Data File, please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s:

- Comments to aid completion of the questionnaire are embedded in cells marked with a red triangle in the top right corner;
- Definitions can be accessed directly by clicking **once** on the cell of a variable. This will automatically link to the respective definition in the Definition Index. If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data with respect to definitions listed in the Definition Index, please provide available data according to national concepts used and provide details in the Metadata File;
- Preferred counting units and rules for specific data sections can be accessed directly by clicking **once** on the heading of the data section. This will automatically link to the preferred counting units and rules listed in the Definition Index. If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data using the recommended counting units and rules, please provide available data according to national counting units and rules and provide details in the Metadata File;
- Where information is unavailable, please leave the cell blank and do not enter 'n/a' or other response. Notes can be entered in the space for comments if necessary. Please do not enter zero (0) unless this is the recorded value;
- In most cases, the calendar year should be used as the reporting period. Where some other annual period is used, such as a fiscal year not corresponding to the calendar year, this should be noted in the space for additional comments;
- Data provided should, where possible, reflect data from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state and local authorities. Where this is not the case, this should also be noted in the space for additional comments;
- Where the data reported contain significant breaks in time series that are due to changes in legislation, definitions or data collection systems, please provide this information in the space for additional comments;
- Data previously reported by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questionnaire under columns entitled 'reported'. This data should be carefully revised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definitions used for the current year, which might differ from previous years. Where these data are incorrect or incomplete, please change/kill as appropriate in the column entitled 'revised' and provide information on changes made in the space for additional comments;

Definition Index and Counting Units

ICCS Crime categories

The new UN-CTS is aligned with the crime categori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including its definitions, numerical coding and use of disaggregating variables.

For a full definition of terms and concepts, please consult the ICCS at: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iccs.html>

ICCS LEVEL 1 CATEGORIES

01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2	Acts leading to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3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4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5	Acts against property only
06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drugs
07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08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09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Disaggregating Variables ("tags")

Disaggregating variables allow the recording of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an offence tha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each individual offence, such as victim and perpetrator characteristics. The table below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isaggregating variables ("tags") used in the UN-CTS. The acronyms in front of each category title provide a shorthand description for coding these variables in crime records.

Table B: Disaggregating Variables

EVENT DISAGGREGATIONS	VICTIM DISAGGREGATIONS	PERPETRATOR DISAGGREGATIONS
At – Attempted/Completed	SV – Sex of victim	SP – Sex of perpetrator
We – Type of weapon used	AV – Age of victim	AP – Age of perpetrator
Sic – Situational context	ViP –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STP – Age status of perpetrator (minor/adult)
Geo – Geographic location	Cit – Citizenship	ViP –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Cy – Cybercrime related		Cit – Citizenship
		Rec – Recidivist status of perpetrator

Counting Units and Counting Rules

Data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be produced in reference to a variety of counting units. Table C outlines the preferred counting unit for specific data sections in the UN-CTS. These recommendations are specific to the purpose of the UN-CTS and are not intended to be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data. Actual counting units used by Member States may sometimes deviate from these recommendations. Member states should indicate the actual counting units used in the UN-CTS in the Metadata File. Please note that some counting units correspond to rotating variables that are included in the UN-CTS only every second year.

Table C: Counting Units and Rules

Counting Units	UN-CTS Section	Description	Rules
OFFENCE	1.1 2.1, 2.2, 2.3, 2.6, 2.7 3.1, 3.2, 3.3, 3.4, 3.5, 3.6, 3.7, 3.8 4.6.1.1 - 4.6.1.11	The preferred counting unit is the individual offence. Each incident with a specific location at a specific point in time should be counted separately. While other counting units may be used in certain countries (for example, a series or a number of offences may form a case, or a series of cases may form an investigation), the recommended counting unit in these tables is the offence.	a) Principal offence rule: DO NOT APPLY b) Multiple (series of) offences of the same type: COUNT AS MORE THAN ONE OFFENCE c) Offences committed by more than one person: COUNT AS ONE
PERSONS (VICTIMS)	1.2, 1.3, 1.4, 1.5, 1.6, 1.7, 1.8 2.4, 2.5, 2.8	The preferred counting unit is the individual victim. This applies specifically to the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serious assault,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as requested in the UN-CTS. In these tables, each victim is recommended to be counted once,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victimizations. If a person has been victimized in a series of these offences over time, it is recommended to count one victim. If a person has been victimized by more than one of these offences in the same event, it is recommended to count one victim. For example: if a person has been victim to sexual exploitation three times in a year, this should be counted as one victim; if a person has been victim to sexual violence and intentional homicide, the victim should be counted as one victim of homicide.	a) Principal offence rule: APPLY b) Multiple (series of) victimizations of the same type: COUNT AS ONE VICTIM c) Victimization of several offences at the same time: COUNT AS ONE VICTIM
PERSONS (OFFENDERS)	1.9, 1.10, 1.11 4.2, 4.3, 4.4, 4.5 5.1, 5.2, 5.3, 5.4, 5.5, 5.6	The preferred counting unit is the individual person. In these tables, the focus is on the total number of persons at a given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is applies specifically to the total number of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rosecuted; brought before the Criminal Courts; Contact/prosecuted/convicted/held convicted; and held; as requested in the UN-CTS. This also applies to the disaggregations of intentional homicide perpetrators. For these tables, it is recommended to count each person once,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For example: if a person has been convicted for serious assault several times in the same year, this should be counted as one person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s convicted. If a person has been prosecuted for burglary and for bribery in the same year, this should be counted as one person in the total	a) Principal offence rule: APPLY b)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prosecuted/convicted/held convicted for multiple (series of) offences of the same type: COUNT AS ONE PERSON c)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prosecuted/convicted/held for more than once (on separate occasions) in one year: COUNT AS

PERSONS (OFFENDERS)	4.1, 4.6.2.1 - 4.6.5.11	The preferred counting unit is the person in reference to an offence. In a) Principal offence rule: DO NOT these tables, the focus is on the flow of persons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APPLY process in reference to an offence. This applies specifically to the number of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rosecuted; convicted; and held; for b) Persons brought into Formal intentional homicide, rape, bribery, drug possession, drug trafficking and the Contact/prosecuted/convicted/held 11 ICCS level 1 categories (see sheet 4 - CJS Process) as requested in the for multiple (series of) offences of UN-CTS. Each person is recommended to be counted separately in reference the same type: COUNT AS MORE to each offence and crime occurrence. For example, if a person is brought THAN ONE PERSON into formal contact for multiple offences, it is recommended to count the person in relation to each offence type; similarly, if a person is convicted c) Persons brought into Formal multiple times in a year irrespective of the offence type, it is recommended Contact/prosecuted/convicted/held to count the person separately for each conviction. more than once (on separate occasions) in one year: COUNT AS MORE THAN ONE PERSON For example: if a person i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for intentional homicide, and one person brought into formal contact for rape; if a person is prosecuted for theft of a motorized vehicle, theft from a shop and damage of public property, this should be counted as three persons prosecuted for ICCS category 5 ("Acts against Property only").
Please note: Data provided by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on pers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reflect the number of individual offenders counted over the whole reference year. Data provided on persons held in prisons and held under other types of supervision should reflect the stock of persons held on 31 December of the reference year		
Crime Disaggregations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ViP)		
ViP	Intimate partner	Current or former spouse or intimate partner (cohabitating or non-cohabitating partner or boyfriend/girlfriend)
ViP	Family members	Blood relatives, relatives by marriage or adoption, and persons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as the victim
ViP	Other perpetrator known to the victim	Friend/acquaintance, colleague/business or work relationship, authority/care relationship
Intentional homicide situational context (SiC)		
SiC	Homicide related to organized criminal group or gang	Victim or perpetrator was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gang, or homicide occurs in a fashion related to organized criminal groups/gangs
SiC	Homicide related to other criminal activities	Homicide may be perpetrat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crime and/or avoid detection. Homicide does not represent the primary goal of the criminal act. This includes homicide related to robbery, and homicide perpetrated during the commission of another criminal offence, but does not include homicide related to organized criminal groups
SiC	Interpersonal homicide	Homicide perpetrated by an intimate partner or family member, which includes homicide perpetrated by an (ex-) partner/ex-spouse, a family member other than a partner/spouse, infanticide and parricide; Homicide perpetrated on persons other than intimate partners or family members as a means of resolving a conflict and/or punishing the victim where the homicide is not instrumental to the accomplishment of a secondary goal. This includes, for example, homicide related to neighbour disputes, revenge-related interpersonal killing, or random and seemingly unprovoked acts of killing but excludes homicides committed for economic gain, homicide committed in the act of another felony crime, gang-
SiC	Socio-political homicide	Homicide related to social prejudice (means discrimination due to the victim's sex, gender, sexual orientation, age, language, ethnic origin, disability, race, religious beliefs and/or economic and social views, including hate crime); Homicide related to political agendas (means killings by terrorist groups with a political agenda, political assassination, and targeted killing of journalists for political reasons); Homicide related to civil unrest (where civil unrest refers to a situation of collective violent hostilities between two or more parties within a country that do not amount to an internal armed conflict); Homicide related to other socio-political agendas (e.g. through mob violence and vigilantism, unlawful killings by the police, excessiv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extrajudicial killings)
SiC	Terrorist offence	Any ac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legal instruments against terrorism, or otherwise intended to cause death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civilian, or to any other person not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hostilities of a situation of armed conflict, when the purpose of such act, by its nature or context, is to intimidate a population, or to compel a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abstain from doing any ac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E/RES/54/109, Article 2(1b))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mechanism of killing (We)		
We	Firearm	Handgun discharge, rifle, shotgun and larger firearm discharge, as well as other and unspecified firearm discharge
We	Attack with another weapon	Sharp object, blunt object or any other object used as a weapon (including deliberately hitting or running over with a motor vehicle)
We	Attack without a weapon / other mechanism of killing	Hanging, strangulation or suffocation, drowning or submersion, pushing from a high place, pushing or placing victim before moving object, bodily force (including sexual assault), assault with drugs and chemical substances, and any other specified means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or offenders by citizenship and sex (Cit)		
Cit	National Citizen	A person who has citizenship of your country; this includes persons with dual-nationality
Cit	Foreign Citizen	A person who does not have citizenship of your country; this excludes citizens with dual-nationality
Intentional homicide offenders by recidivist status and sex (Rec)		
Rec	Previously convicted for any type of crim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with the police
Cyber-related crimes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Child pornography; Fraud)		
Cy	Cyber-related	If the use of computer data or computer systems was an integral part of the modus operandi of the crim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2013. Web. < http://www.unodc.org/documents/organized-crime/UNODC_CCPCJ_EG4_2013/CYBERCRIME_STUDY_210213.pdf >.)
Please note: all numerical codes refer to the ICCS categories. For a full definition of terms and concepts, please consult the ICCS at: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iccs.html		
Intentional homicide		
01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1 Intentional homicide		
Unlawful death inflicted upon a person with the intent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Inclusions: Murder; honour killing; 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dowry-related killings; femicide; infanticide; voluntary manslaughter; extrajudicial killings; killings caused by excessiv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etats officielle Exclusions: Death due to legal interventions; justifiable homicide in self-defence;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homicide without the element of intent is non-intentional homicide (0103); non-negligent or involuntary manslaughter (01031); assisting suicide or instigating suicide (0104); illegal feticide (0106); euthanasia (0105)		
0102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Attempt to inflict unlawful death upon a person with the intent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Inclusions: Attempted murder; attempt to inflict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attempted infanticide; attempted femicide Exclusions: Conspiracy to procure or commit illegal feticide (0106)		
Violent crimes		
02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0111 Serious assault Intentional or reckless application of serious physical force inflicted upon the body of a person resulting in serious bodily injury.	Inclusions: Inflicting grievous bodily harm; wounding; aggravated assault; inflicting bodily harm under aggravating circumstances; battery; acid attacks; female genital mutilation; poisoning; assault with a weapon; forced sterilization; taking human blood, organs or tissues by use of violence. Exclusions: Threat to inflict serious bodily injury (020121); torture (1101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2011
020221 Kidnapping Unlawful detention and taking away of a person or persons against their will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force, threat, fraud or enticement) for the purpose of demanding an illicit gain, any other economic gain or other material benefit for their liberation, or in order to oblige someone to	Inclusions: Kidnapping; express kidnapping Exclusions: Abduction of a minor (02021); TIP (0204); illegal adoption (020291); taking a hostage (020222);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2022
0208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Fear or emotional distress caused by a person's behaviour or act. - Emotional distress, at minimum, is mental or psychological pain.	Inclusions: Bullying; cyber-bullying; non-sexual harassment; persistently calling a person;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2081 - 02089 Exclusions: Acts related to expressions of controlled social beliefs and norms (08032); intentional remark, action or communication (spoken or otherwise) by a person which harms another person's reputation, respect, confidence in which a person is held, or induces hostile or disagreeable opinions or feelings (0209)
03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301 Sexual violence Unwanted sexual act, attempt to obtain a sexual act, or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unwanted sexual attention without valid consent or with consent as a result of intimidation, force, fraud, coercion, threat, deception, use of drugs or alcohol, or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11 - 03012 Exclusions: Acts of abuse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power or trust, or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for profiting monetarily, socially or politically from the prostitution or sexual acts of a person (0302); coercion (0205); prostitution offences, pornography offences and other acts against public order sexual standards such as incest not amounting to rape and exhibitionism (0802); assaults and threats (0201); slavery and exploitation not amounting to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203); TIP for sexual exploitation (02041); harassment and stalking (0208)
03011 Rape Sexual penetration without valid consent or with consent as a result of intimidation, force, fraud, coercion, threat, deception, use of drugs or alcohol,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the giving or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111 - 030119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1
03012 Sexual assault Unwanted sexual act, attempt to obtain a sexual act, or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unwanted sexual attention not amounting to rape. - Rape as defined in 03011.	Inclusions: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committed against a marital partner against her/his will; sexual assault against a helpless person;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121 - 030129 Exclusions: Rape (0301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1
03019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not described or classified in categories 03011 - 03012. - Sexual violence as defined in 0301.	Inclusions: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National definition), not included in 03011 - 03012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1
0302 Sexual exploitation Acts of abuse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power or trust, or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for profiting financially, physically, socially or politically from the prostitution or sexual acts of a person.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3021 - 03029 Exclusions: Rape (03011); sexual violence (0301); prostitution offences, pornography offences and other acts against public order sexual standards such as incest and exhibitionism (0802); abuse of function (07033); assaults and threats (0201); slavery and exploitation not amounting to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203); TIP for sexual exploitation (02041); harassment and stalking (0208); sexual offences (0209)
030221 Child pornography Procuring, arranging, facilitating or controlling a child for the purposes of creating child pornography and/or possessing, disseminating, broadcasting, transmitting, exhibiting or selling child pornography. - Child as defined in national legislation.	Inclusions: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sharing child pornography; creating child pornography; downloading child pornography; procuring sexual images or other forms of child abuse materials from children Exclusions: Pornography offences (08022); statutory rape (030113);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302
04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1 Robbery Unlawfully taking or obtaining property with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against a person with intent to permanently or temporarily withhold it from a person or organization.	Inclusions: Theft with violence; banditry; dacoity;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4011 - 04019 Exclusions: Burglary, theft and other acts only against property (05); assaults and threats (0201); possession of stolen goods or money; receiving, handling, disposing, selling or trafficking stolen goods; using stolen parts for producing other goods; concealment of stolen goods (0704); property damage (0504); kidnapping (02022); demanding a
Other crimes	
05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1 Burglary Gaining unauthorized access to a part of a building/dwelling or other premises with or without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building/dwelling, with intent to commit theft or when actually committing theft.	Inclusions: Breaking and entering; unlawful entry with intent to commit theft; access by deception with intent to commit theft;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5011 - 05019 Exclusions: Unlawfully taking or obtaining property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 it from a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consent and without the use of force, threat of force or violence, coercion or deception (0502); possession of stolen goods or money; receiving, handling, disposing, selling or trafficking stolen goods; using stolen parts for producing other goods; concealment of stolen goods (0704); property damage (0504); unlawfully taking or obtaining property directly from a person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or temporarily withhold it from a person or organization with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0401)
0502 Theft Unlawfully taking or obtaining of property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withhold it from a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consent and without the use of force, threat of force or violence, coercion or deception.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5021 - 05029 Exclusions: Possession of stolen goods or money; receiving, handling, disposing, selling or trafficking stolen goods; using stolen parts for producing other goods; concealment of stolen goods (0704); obtaining money or other benefit or evading a liability through deceit or dishonest conduct (0701); robbery (0401); property damage (0504); theft after unauthorized access to premises (0501);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0503); identity theft (07019)
05021 Theft of a motorized vehicle or parts thereof Theft of a motorized vehicle or parts of a motorized vehicle.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50211 - 050219 Exclusions: Robbery of a car or vehicle (04012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502
06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drugs	
0601 Unlawful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 Unlawful handling, possession, purchase, use, trafficking, cultivation or production of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 for personal consumption and for non-personal consumption.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6011, 06012 and 06019 (other unlawful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 Exclusions: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psychoactive substances (02072); causing death by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or alcohol (010321)
06011 Unlawful possession, purchase, use, cultivation or production of controlled drugs for personal consumption Unlawful possession, purchase, use, cultivation or production of controlled drugs for personal consumption.	Inclusions: Drug possession; drug use; drug cultivation for personal consumption;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60111 - 060112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601
06012 Unlawful trafficking, cultivation or production of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 not for personal consumption Unlawful offering,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sale, delivery, brokerage, dispatch, dispatch in transit, transport, importation, exportation, cultivation, production	Inclusions: Drug cultivation not for personal consumption; drug production; drug trafficking;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60121 - 060129

unlawful in various, temporary,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shipment, manufacture, extraction or preparation of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 not in connection with the use or possession of drugs for personal consumption.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601
07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0701 Fraud Obtaining money or other benefit, or evading a liability through deceit or dishonest conduct.	Inclusions: Mortgage fraud, financial fraud, quackery, impersonation, identity theft; possession, creation or use of false weights for measure;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7011 - 07019 Exclusions: Obtaining money without dishonest conduct but with intent to withhold it from the owner (0502); fraudulent insolvency, insider trading and other acts against commercial financial regulations (08042); electoral fraud (08079); illicit enrichment (07035)
0703 Corruption Unlawful acts as def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gainst corruption.	Inclusions: Active and passive bribery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ive and passiv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e and passive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7031 - 07039 Exclusions: A course of action demanded from a person by another person through the use of force, threat, intimidation, threat to reveal compromising information, or the threat of defamation (0205)
07031 Bribery Promising, offering, giving, soliciting, or accepting an undue advantage to or from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In order that the person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Inclusions: Bribery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70311 - 070312 Exclusions: Asking or enticing another to commit bribery by the use of force, threat, intimidation, threat to reveal compromising information, or the threat of defamation (0205);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703
07032-07039 Other acts of corruption Other acts of corruption includes embezzlement, abuse of functions, trading in influence, illicit enrichment and all other acts of corruption not mentioned above.	Inclusions: Embezzlement (07032); Abuse of functions (07033); Trading in influence (07034); illicit enrichment (07035); Other acts of corruption (07039)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7032-07039
07041 Money laundering Conversion or transfer of property, knowing that such property is the proceeds of crime, for the purpose of concealing or disguising the illicit origin of such property or of helping any person who is involved in the commission of the predicate offence to evade the legal consequences of his or her actions, as well as the concealment or disguise of the true nature, source, location, disposition, movement or ownership of rights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nclusions: The conversion or transfer of property; illicit concealment or disguise of property related information; the illicit acquisition, possession or use of laundered property; "self-laundering"; concealment or continued reten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704
08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08051 Smuggling of migrants offences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from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Inclusions: Smuggling of migrants offences; harbouring smuggled migrants Exclusions: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805
09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09012 Trafficking of weapons and explosives Trafficking of weapons and/or explosives.	Inclusions: Manufacturing and trafficking of firearms, parts, components and ammunition, regulated or prohibited weapons or explosives, chemical, biological or radioactive materials; selling without a dealer's licence or to an unlicensed person; unlicensed importing/exporting;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090121 - 090129 Exclusions: Import/export offences (08042); customs offences (0804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901
09031 Unlawful access to a computer system Unlawful acts involving entry into parts or the whole of a computer system without authorization or justification.	Inclusions: Access to a computer system without right; hacking Exclusions: Unlawful access to private computer files that amounts to intrusions upon one's privacy (0201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903
09032 Unlawful interference with a computer system or computer data Unlawful acts hindering the functioning of a computer system, as well as acts involving damage, deletion, deterioration, alteration or suppression of computer data without authorization or justification.	Inclusions: Damaging, deletion, alteration, suppression of computer data; hindering the functioning of a computer system; denial of service attack, deleting computer system files without authorization; computer system damage; apply all inclusions in 090321 - 090322 Exclusions: Damaging property that is not computer data (0504);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903
09033 Unlawful interception or access of computer data Unlawful acts involving gaining access to computer data without authorization or justification, including obtaining data during a transmission process that is not intended to be public, as well as obtaining computer data (such as by copying data) without authorization.	Inclusions: Interception of computer data without right; recording transmissions without right within a wireless network, copying computer files without authorization Exclusions: Unlawful access to private computer files that amounts to intrusions upon one's privacy (02011); apply all exclusions listed in 0903
09051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crimin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Inclusions: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criminal group Exclusions: A committed offe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is classified to the particular offence; the link to an organized criminal group is identified by making use of the "situational context" disaggregation; apply all exclusions in 0905
09061 Participation in a terrorist group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a terrorist group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one or more terrorist offences.	Inclusions: Participation or membership in a terrorist group Exclusions: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0101); A committed terrorist offence is classified to the particular offence; the link to terrorism or a terrorist group can be identified with the situational context disaggregation
09062 Financing of terrorism Financing of terrorist acts, individual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Inclusions: Financing terrorism; financing terrorist groups Exclusions: 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 (0101); A committed terrorist offence is classified to the particular offence; the link to terrorism or a terrorist group can be identified with the situational context disaggregation
10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001 Acts that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or degradation Acts that result in the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sions: Air, water, soil pollution;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10011 - 10019 Exclusions: Pollution or degradation through the illegal movement or dumping of waste (1002); litter offences (0801); wilful destruction, damage, or defacement inflicted upon public or private property (0504)
1002 Acts involving the movement or dumping of waste Acts involving the illegal movement or dumping of waste.	Inclusions: Illegal trafficking of waste; illegal movement of waste; illegal waste dumping;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10021 - 10022 Exclusions: Litter offences (0801)
1003 Trade or possession of protected or prohibited species of fauna and flora Unlawful trade or possession of specimens of protected or prohibited wild fauna or flora species.	Inclusions: Trafficking in wildlife, unlawful trade or possession of wildlife;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10031 - 10032 Exclusions: Theft of a pet (050221); offences against the treatment, raising or keeping of animals (10091); robbery of livestock (04014); theft of livestock (05025)
1004 Acts that result in the depletion or degradation of natural resources Acts that result in the unlawful exploitation or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fauna or flora species, land, water or air.	Inclusions: Apply all inclusions listed in 10041 - 10049 Exclusions: Acts that result in the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not amounting to depletion or degradation (1001)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ss (including Prisons)	
CJS Process	
Persons in Formal Contact with the police and/or 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s suspected, or arrested, or cautioned, for a criminal offence

Persons Prosecuted	Alleged offenders against whom prosecution commenced in the reporting year. Persons may be prosecuted by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law enforcement agency responsible for prosecution. All persons for which prosecution starts should be counted, irrespective of the case-ending decision.
Persons Brought before the Criminal Courts	Persons brought before any legal body authorized to pronounce a conviction under national criminal law, whether the person is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at the national level. Persons brought before court in a plea-bargaining procedure, or in an abbreviated procedure, should be included.
Lega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by a lawyer before a prosecutor, court or tribunal
Provided at no cost for the beneficiary	Free of charge representation by a lawyer in court; potential providers include national/federal government (e.g. public defender's office), Civil-Society Organizations (CSOs), private lawyer schemes (e.g. pro bono), or any other private or public institution
Persons Convicted	Persons found guilty by any legal body authorized to pronounce a conviction under national criminal law, whether or not the conviction was later upheld. Persons receiving a sentence after plea-bargaining, or in an abbreviated court procedure, should be counted as persons convicted. The total number of persons convicted should also include persons convicted of serious special law offences but exclude persons convicted of minor road traffic offences, misdemeanours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n a specified day and should exclude non-criminal prisoners held for administrative purposes, for example, persons held pending investigation into their immigration status or foreign citizens without a legal right to stay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All institutions,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son administration, where persons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The institution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enal, correctional and psychiatric facilities and may be either publicly or privately financed. Community-based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are not detention facilities and centres for the detention of foreign citizens held pending investigation into their immigration status, or for the detention of foreign citizens without a legal right to stay, should be excluded
Cit National Citizen	A person who has citizenship of your country; this includes persons with dual-nationality
Cit Foreign Citizen	A person who does not have citizenship of your country; this excludes citizens with dual-nationality
Persons held by sentencing status and sex	
Unsentenced persons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who are untried, pre-trial or awaiting a first instance decision on their case from a competent authority regarding their conviction or acquittal. Persons held before and during the trial should be included. Sentenced persons held awaiting the outcome of an appeal in respect of verdict or sentence or who are within the statutory limits for appealing their sentence should be excluded
Sentenced persons held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after a first instance decision or a final decision on their case has been made by a competent authority. This includes sentenced prisoners with a final decision and persons held who are awaiting the outcome of an appeal in respect of verdict or sentence or who are within the statutory limits for appealing and persons held who have been convicted but who have not received a sentence yet. Persons held who have received a custodial sentence for one crime but are still under trial and unsentenced for another crime should be
Persons held with a non-final sentencing decision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after a first instance decision on their case has been made by a competent authority. This includes sentenced prisoners who are awaiting the outcome of an appeal in respect of verdict or sentence or who are within the statutory limits for appealing and persons held who have been convicted but who have not received a sentence yet
Persons held with a final sentencing decision	Persons held in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after a final decision on their case has been made by a competent authority
Mortality of persons held	
Deaths due to external causes	Death caused by environmental events or by circumstances suggestive of environmental causes, including death due to intentional injury, such as homicide or suicide, and death caused by unintentional injury in an accidental manner. Deaths due to acute alcohol or drugs intoxication should be included. Persons sentenced to death by a competent authority and who were executed on the basis of a final ruling while in prison should be excluded
Deaths due to natural causes	Death by natural causes that are primarily attributable to an illness or an internal malfunction of the body not directly influenced by external forces, for example death from age-associated diseases, heart attacks or complications from virus infections
Persons entering prisons by sentencing status	
Persons entering prisons	All persons entering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This includes persons entering pre-sentence detention and persons entering prisons after a sentence was pronounced by a competent authority, as well as entries that occurred after the revocation, suspension or annulment of a conditional release or probation and entries that occurred due to transfers from a foreign country. Entry following a period of authorised absence or temporary release should be excluded
Persons entering unsentenced	All persons entering prisons, pen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that occurred before a sentence was pronounc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is includes entries that occurred before a trial and entries during a trial
Persons held under other types of supervision by sex	
Other types of supervision	Sanctions and measures which maintain convicted offenders in the community and involve some restrictions on their liberty through the imposition of conditions and/or obligations. The term designates any sanction imposed by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way of enforc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utside a prison establishment.
Number of prison facilities	
Facility	Prison facility denotes a building, or a group of buildings under common administration or sharing common services, used for the detention of prisoners
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nel and Capacity	
Police personnel by sex/ by function	
Police Personnel	Personnel in public agencies as at 31 December whose principal functions are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 and the apprehension of alleged offenders
Preventive Police Personnel (otherwise known as law enforcement officer or constable)	All uniformed police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criminal offences and protection of public safety. Duties may include community policing, patrol in assigned areas, responding to emergencies, making arrests or issuing citations, among others. Data should also include members from the traffic control
Detective or Investigative Police Personnel	All individuals responsible for any task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ces, after they have occurred. Data should include forensic and technical staff
Prosecution personnel by sex	
Prosecuting Personnel	Both full-time and part-time officials as at 31 December whose duty is to initiate and maintain criminal proceedings on behalf of the state in relation to a criminal offence. Data concerning support staff (e.g. secretaries, clerks, paralegals etc.) should be excluded
Professional Judges or Magistrates by sex	
Professional Judges or Magistrat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officials as at 31 December authorized to hear specifically criminal cases, including in appeal courts, and to make dispositions in a court of law. Please also include authorized associate judges and magistrates
Prison personnel by sex / by function	
Prison Staff	All individuals employed in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at 31 December, including management, treatment, custodial and other (maintenance, food service etc.) personnel

부 록 2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조사 설문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외부청렴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기관명)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에 근무하는 ○○○(면접원 이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잠시만 평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상위·하위기관명) _____
 □ 대리인여부 : 1. 민원인 2. 대리인

□ 측정업무명 : _____
 □ 행정처분 경험 : 1. 있음 2. 없음

SQ1) 선생님께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 △△업무로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과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 ② 없다 ☒ 조사 종료

지금부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인식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고, 업무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연·학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갑질 관행 관련) 관련 공무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에게 직접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다음 각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6)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6-1)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금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은 모두 몇 번입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문6-2)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금품의 금액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 요구 받았으나 제공하지 않음 ④ 16~30만원
 ② 5만원 이하 ③ 6~15만원 ⑤ 31~50만원 ⑥ 51~100만원 ⑦ 101~200만원
 ⑧ 201~300만원 ⑨ 301~500만원 ⑩ 501~1,000만원
 ⑪ 1,001만원 이상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문7)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7-1)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항목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은 모두 몇 번입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문7-2)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항목의 금액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 ① 요구 받았으나 제공하지 않음 ④ 16~30만원
② 5만원 이하 ⑤ 6~15만원 ⑦ 101~200만원
③ 31~50만원 ⑥ 51~100만원 ⑧ 201~300만원 ⑨ 301~500만원 ⑩ 501~1,000만원
⑪ 1,001만원 이상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문8)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담당 직원의 친인척 채용청탁,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8-1)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은 모두 몇 번입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문9)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언제 요구받거나 제공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시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업무 처리 전 ② 업무 처리 중
③ 업무 처리 후 ④ 수시로
⑤ 명절, 연말연시나 기관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⑥ 담당 공무원(직원)의 인사 이동 시기에
⑦ 기타(적을 것)

문10) (경험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제공하였다면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요구받았으나 제공하지 않음)
①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
②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③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④ 일의 성사나 처벌 완화를 위해
⑤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⑥ 관행상/인사차/친분유지를 위해
⑦ 기타(적을 것)
(직접 제공하지 않아서 모름)

추가문항

문11) 선생님께서는 □□(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1-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요청을 받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 분류용 질문

DQ1) 이상으로 청렴도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 분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2) 성별(면접원 기록, 음성으로 구분)

- ① 남자 ② 여자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UN-CTS data: Case Study of Korea****Youngshil Park, Youkang Chin**

International statistic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widely used for understanding the global situation and comparing countries about certain issues.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check the quality of the country data which is provided to the global level as a source for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Given the impact of the global statistics to policy mak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verify whether the national data is properly us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definitions and methodology. This can help build up more reliable data flow system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Korean data being collected by the United Nations Criminal Trend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 an important source of SDGs crime data, conforms to global definitions. Six SDGs crime-related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and the Korean data of the indicators were compa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 Korea. If there is any disparities between the global and the national source data, we tri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of the difference and to suggest any necessary measures to minimize the gap.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some indicators are based on the clear national official sources while other indicators have no clear source data. Even if the sources are clear, there are some gaps in concept or definitions between the two data.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som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ata for the SDG indicators.

The study implies that we need to be careful in interpreting national data being used for international statistics. This issue is not just limited to the crime sector. At the same time, the data flow system for SDGs monitoring is expected to be more enhanced by thoroughly verifying the quality of the international data and improving i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concer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ey terms : UN-CTS, intentional homicide, violent crime, fear of crime, crime reporting rate, unsentenced detainees, bribery

집필진

-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사무관)
- 진유강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주무관)

연구보고서 2020-03

UN-CTS 한국 데이터 검증 연구 : SDGs 지표 중심으로

인 쇄 2021년 4월 12일
발 행 2021년 4월 13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통계청
통계개발원